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2012. 8.

2012년 전라북도 재정공시



천·년·의·비·상

전라북도

목 차

Ⅰ. 재정공시 개요 ····· 1

Ⅱ. 공통공시 총괄 ····· 3

Ⅲ.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5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현황 ····· 5

2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9

3 채권관리 현황 ····· 11

4 기금운영 현황 ····· 13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15

6 통합재정정보 ····· 16

Ⅳ.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18

1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 18

2 감사원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23

3 주민 주요 관심항목 ····· 23

Ⅴ. 별도자료 ····· 38

Ⅵ. 특수공시 ····· 45

Ⅶ. 용어 해설

Ⅷ.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2012년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

전라북도 재정공시 제1호(2012.8.31.) **전라북도지사 (인)**

○ 우리 도의 '11년도 세입상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는 4조 6,113억원으로 전년대비 4,2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1,574억원이며 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9만원입니다.

▶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3조 1,684억원입니다.

○ 도로건설, 재해예방, 하수시설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 도의 채무 총액은 7,181억원으로 전년보다 25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자동차매매 등 지역개발공채가 증가(458억)한 것이며 **자체상환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채무, 지역개발공채발행 등을 제외한 우리도의 실질 채무는 전년보다 205억원이 줄어든 3,262억원입니다.**

또한, 회수될 자금에서 상환할 지방채를 제외한 실질 도민1인당 채무액은 17만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공익사업에 의한 공공용지(도로, 하천 등) 취득과 잠업시험지이전사업 등을 취득하고 민간육종단지 유치에 따른 축산시험장 부지 매각과 (구)산림환경연구소 교환 부지 및 폐천 부지 등을 매각하였고 공유재산 가격평가 방식이 5년마다 재평가 방식에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변경되어 현재는 총 12조 1,15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와 동종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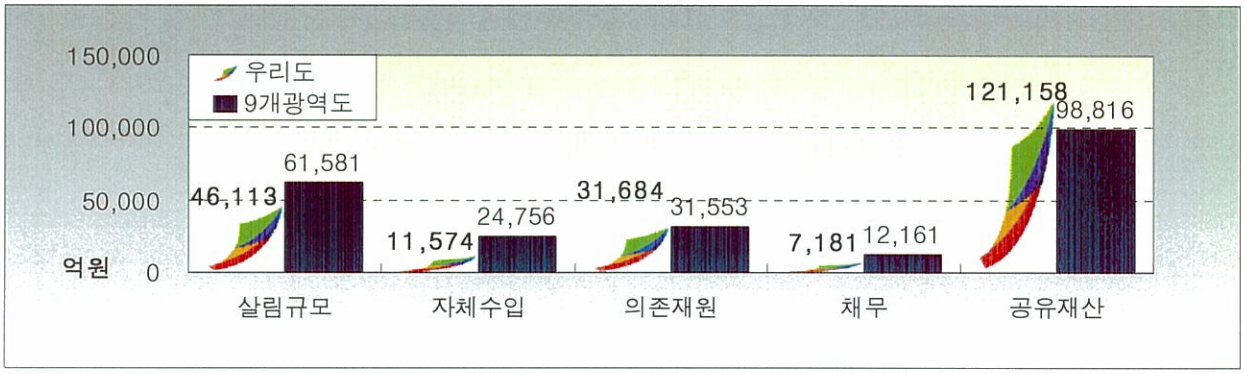

○ 우리 도의 '11년 살림규모는 4조 6,113억원으로 9개 광역도 평균액(6조 1,581억원) 보다 1조 5,468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1조 1,574억원으로 9개 광역도 평균액(2조 4,756억원)보다 1조 3,182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3조 1,684억원으로 9개 광역도 평균액(3조 1,553억원)보다 131억원이 많습니다.

▶ 총 채무액은 9개 광역도 평균액(1조 2,161억원)보다 4,980억원이 적은 7,181억원 입니다.

▶ 한편, 우리도 공유재산 12조 1,158억원은 9개 광역도 평균액(9조 8,816억원)과 비교하여 2조 2,342억원이 많습니다.

○ 우리 도의 '11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5%이며(전국 평균 51.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8.2% (전국 평균 75.9%)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1년도 최종예산기준('12년도 자치단체 예산개요 인용)**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때, 우리 도의 재정은 9개 광역도와 비교시 재정규모는 평균보다 적고,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도 낮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채무액은 광역도 평균액의 59%(4,980억원이 적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은 높은 수준이고 재정효율성과 동시에 재정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정분야 주요 평가 수상 및 인센티브 확보 내역

- 광특회계 운영성과 평가 ('11년) 우수기관 선정
- 재정조기 집행 평가 ('09~'12년) 4년연속 우수 기관, 특별교부세 22.5억원
- '11년 복권기금사업 평가 전국 1위 선정, 인센티브 4.6억원
- 지방재정분석('09~'11년)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Ⅱ.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C=A-B)	증감률 (C/B)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9개도)	비고
① 세입·세출결산	세 입	4,611,264	4,185,347	425,917	10.2%	913,822	6,158,129	
	세 출	4,383,626	3,986,970	396,656	9.9%	786,573	5,682,510	
②-1 지방채무(원금기준)		718,142	692,830	25,312	3.7%	131,916	1,216,127	지역개발기금 매출 공채 증가
②-2 일시차입금(원금기준)		-	-	-	-	-	-	
③ 채권 현재액(원금기준)		758,605	636,292	122,313	19.2%	77,217	1,366,967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증가
④ 기금운용 현황		249,117	247,787	1,330	0.5%	57,202	341,404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11년 재무보고서의 도로, 하천 금액 포함)	공유재산	12,115,849	12,184,057	△68,208	△0.6%	2,409,930	9,881,683	가격평가 방식 변경으로 가격감소
	물 품	19,906	43,814	△23,908	△54.6%	8,682	35,791	관리대상 품목 일부제외
⑥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3,464,586	13,235,419	229,167	1.7%	4,033,159	17,489,917	
	부채총계	748,001	726,947	21,054	2.9%	182,288	1,415,923	
	수익총계	4,099,814	3,765,898	333,916	8.9%	732,960	5,254,247	
	비용총계	3,785,861	3,535,412	250,449	7.1%	626,555	4,867,692	
⑦ 통합재정수지(예산편기준)		△83,401	△10,513	△72,888	693.3%	△7,464	△140,929	
⑧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전국평균은 광역자치단체(16) + 기초자치단체(228) 평균임

※ 동종단체 평균은 광역도(9개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임

※ '11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 이유는 세출부문에서 열악한 시군에 교부하는 자금이 '10년보다 1,207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도 융자금 등의 지출로 전년도보다 919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건전재정 운영에는 문제되지 않음

※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과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상 부채 총계가 차이나는 이유는 복식부기상 부채에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로써 향후 발생할 채무금액까지 포함이 되어 있음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11년도 (A)	'10년도 (B)	증감 (C=A-B)	증감률 (C/B)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9개도)	비고
① 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민주요관심항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220,327	210,160	10,167	4.8%	69,822	290,417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216	1,990	226	11.4%	685	2,599	편성은 '10년도와 동일하나 '10년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008	2,650	358	13.5%	846	4,114	의원수 5명 증가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9,065	8,831	234	2.6%	3,584	9,263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66,281	61,526	4,755	7.7%	14,296	69,824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변경후	9,351	6,401	2,950	46.1%	4,782	17,192	기본경비 과목 추가(4종)로 증가
		변경전	6,970	6,401	569	8.8%			
	③-7 출연·출자금 현황		38,499	40,295	△1,795	△4.5%	9,911	86,525	부품소재 산업 기반구축 사업 완료로 감소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20,581	21,020	△439	△2.1%	8,963	24,649	
	③-9 연말지출 비율		10,484	17,545	△7,061	△40.2%	15,469	18,568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262,759	248,689	14,070	5.7%	63,939	637,062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4,588	3,762	826	22.0%	1,642	4,849	소방직 공무원 충원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982,482	954,136	28,346	3.0%	166,018	1,082,308	
	③-13 보증채무현황		-	-	-	-	5,595	-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전국평균은 광역자치단체(16) + 기초자치단체(228) 평균임

※ 동종단체 평균은 광역도(9개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임

※ 업무추진비가 '10년대비 증가한 이유는 '11년 편성은 동일하게 하였으나 '10년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5% 삭감하였기 때문임

- '11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우리도 (실링) 1,656백만원 → (편성) 1,444백만원

Ⅲ.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1 세입 ·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11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B/A	미수납액		
						계 (A-B)	불납결손액	다음년도 이월액
합 계		4,521,732	4,636,696	4,611,264	99.5%	25,432	6,532	18,900
일반회계	소 계	3,818,115	3,924,390	3,899,012	99.4%	25,378	6,532	18,845
	지 방 세	656,004	754,627	731,809	97.0%	22,818	6,434	16,383
	세외수입	208,591	221,898	219,338	98.8%	2,560	98	2,462
	지방교부세	712,617	718,517	718,517	100%	-	-	-
	보 조 금	2,191,103	2,179,548	2,179,548	100%	-	-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9,800	49,800	49,800	100%	-	-	-
특별회계		703,617	712,306	712,252	100%	54	-	54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329,910	334,935	334,935	100%	-	-	-
기타	소 계	373,707	377,371	377,317	100%	54	-	54
	농어촌주택사업	11,326	14,853	14,853	100%	-	-	-
	동부권특별회계	20,390	20,399	20,399	100%	-	-	-
	의료급여기금	341,991	342,119	342,065	100%	54	-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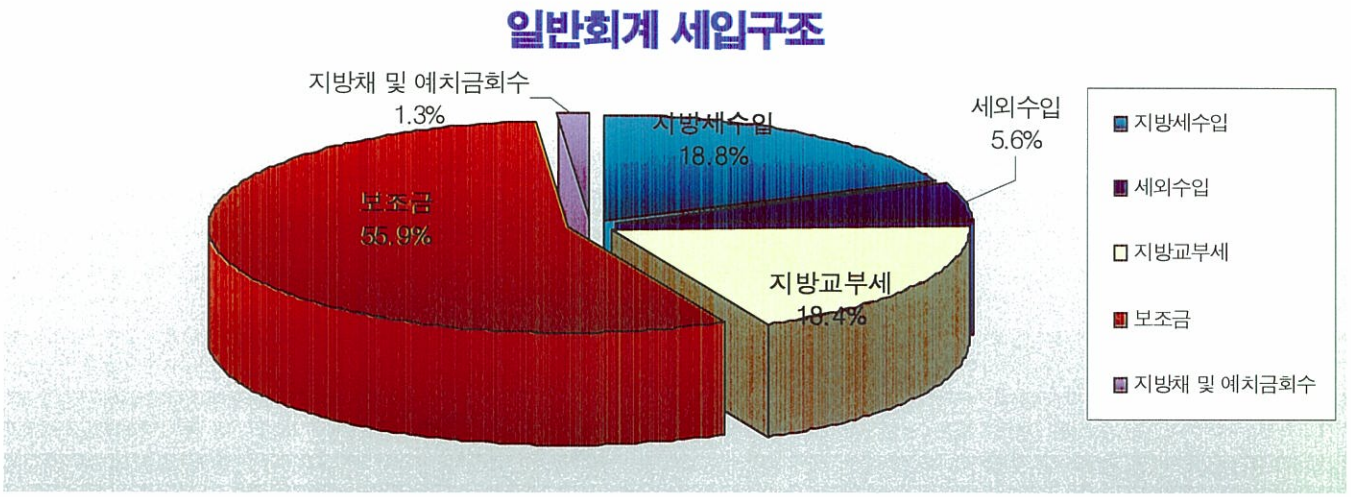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입결산	3,298,218	3,763,293	4,235,862	4,185,347	4,611,264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의 실제수납액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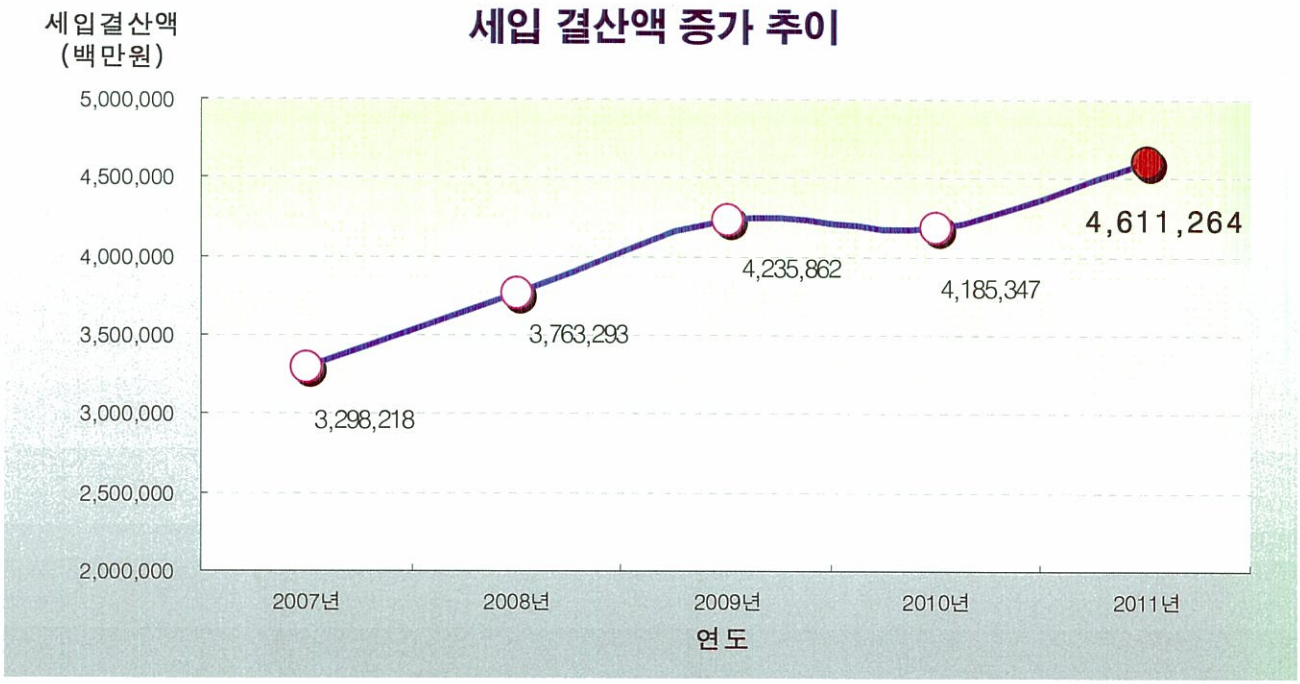

세입이란?

-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사용·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됩니다.

☞ 세입 결산액 주요 증가 원인

- 지방세 수입의 경우 일시적인 대형 과세물건(무주리조트 100억 등) 발생,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체납액 감소, 2011년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시행으로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거래되는 등 2010년(6,477억) 보다 841억원이 더 수납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109억, 전년도이월사업 216억, 일반부담금 70억원 등이 증가되어 2010년(1,885억)보다 308억원이 증가 되었음

나. 세출결산('11년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B)	%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A-B-C)	%
합 계		4,521,734	4,418,712	4,383,626	96.9%	79,378	58,731	1.3%
일반회계	소 계	3,818,117	3,741,457	3,706,371	97.1%	79,378	32,368	0.8%
	일반공공행정	292,900	291,377	291,064	99.4%	313	1,523	0.5%
	공공질서 및 안전	174,851	171,875	166,935	95.5%	7,880	36	0%
	교 육	175,885	175,850	175,850	100%	0	34	0%
	문화및관광	167,775	167,137	166,777	99.4%	696	301	0.2%
	환경보호	296,230	283,681	282,822	95.5%	937	12,472	4.2%
	사회복지	983,943	982,482	982,482	99.9%	0	1,461	0.1%
	보 건	55,326	55,294	55,294	99.9%	0	32	0.1%
	농림해양수산	741,568	733,982	727,070	98.0%	13,280	1,218	0.2%
	산업·중소기업	175,456	158,683	157,226	89.6%	18,010	221	0.1%
	수송 및 교통	174,902	171,220	164,534	94.1%	9,812	556	0.3%
	국토 및 지역개발	323,907	307,811	294,353	90.9%	28,349	1,206	0.4%
	과학기술	12,456	12,449	12,348	99.1%	101	7	0.1%
	예비비	12,313	0	0	0%	0	12,313	100%
	기 타	230,605	229,616	229,616	99.6%	0	989	0.4%
특별회계		703,617	677,255	677,255	96.3%	0	26,362	3.7%
공기업	지역개발기금	329,910	307,111	307,111	93.1%	0	22,799	6.9%
기타	소 계	373,707	370,144	370,144	99.0%	0	3,563	1.0%
	농어촌주택사업	11,326	11,318	11,318	99.9%	0	8	0.1%
	동부권특별회계	20,390	20,390	20,390	100%	0	0	0%
	의료급여기금	341,991	338,436	338,436	99.0%	0	3,55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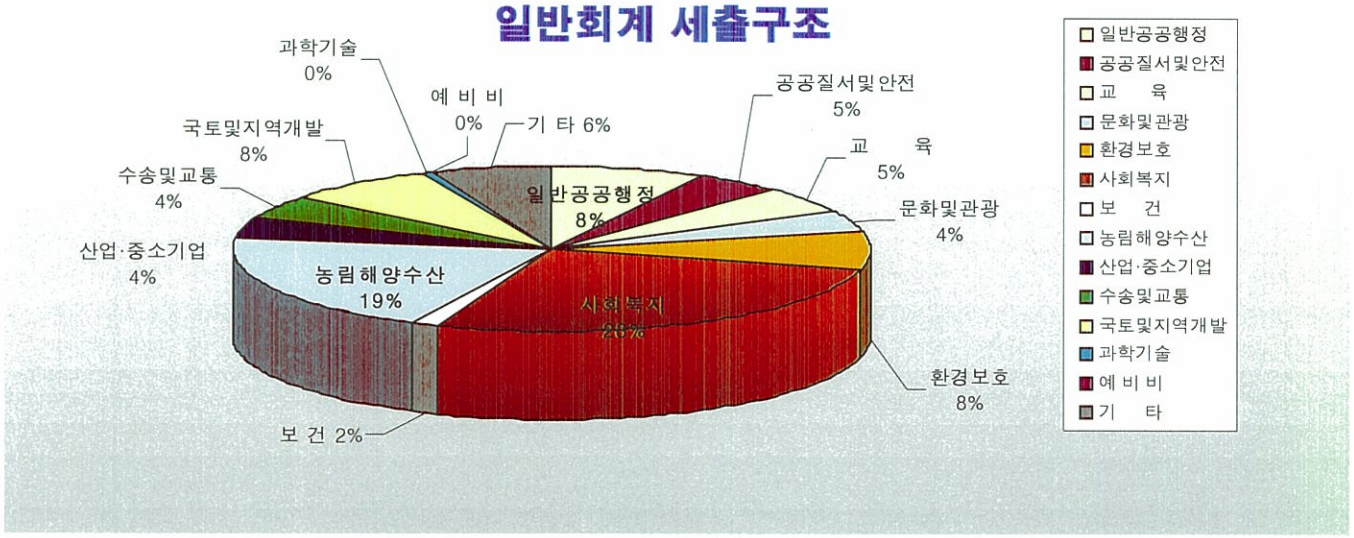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	3,110,963	3,468,486	4,031,581	3,986,971	4,383,626

▸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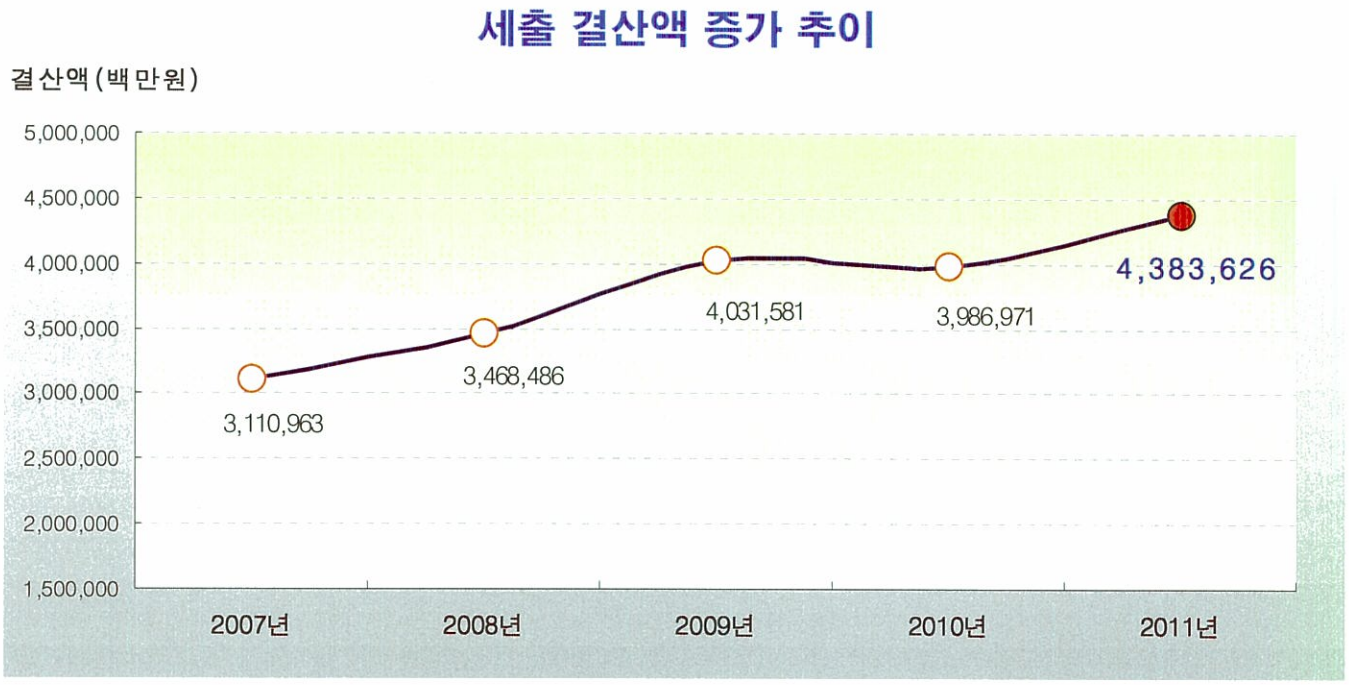

2 지방채 ·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②-1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92,829	25,313	145,651	120,338	718,142	1,874,031	383
일 반 회 계		188,703	△8,894	18,000	26,894	179,809		
특별회계	소 계	497,926	40,407	127,651	87,244	538,333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497,926	40,407	127,651	87,244	538,33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6,200	△6,200	0	6,200	0		

▶ 1인당 채무액은 천원단위로 표시

▶ **채무액(7,181억) = 지방채(1,618억) + 채무부담행위(180억) + 지역개발채권(5,383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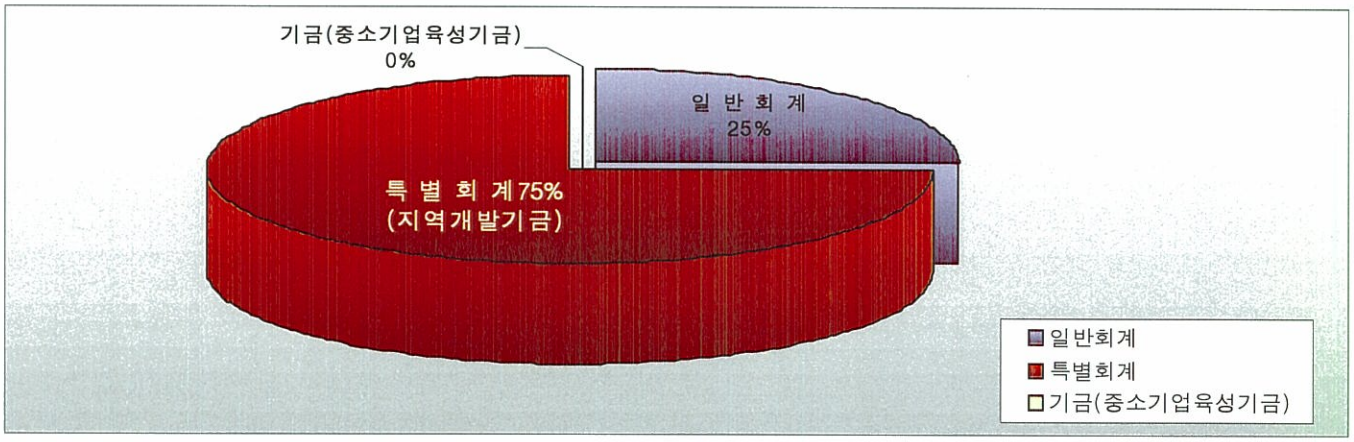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무현황	556,006	551,137	676,663	692,829	718,142
실질채무	265,855	278,228	365,749	346,705	326,221

- '09년 지방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08년 금융위기로 지방세 부족분을 지방채(782억) 발생(정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권장)
- **채무현황 수치는 결산서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채무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상환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자동차 구입시 매입하는 공채 등)과 회수될 자금으로 상환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이 포함된 수치로 실제 채무는 3,262억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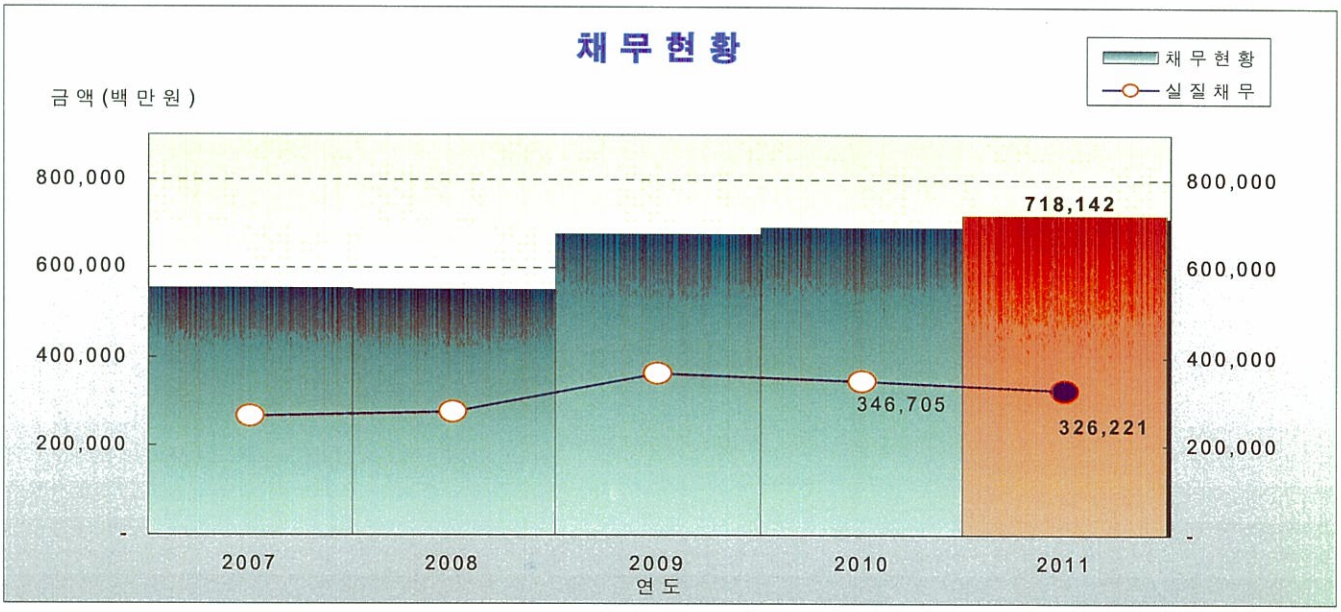

☞ 경기활성화로 자동차 등 지역개발채권 발행 증가로 전년대비 지방채무가 253억원 증가했으나 도가 실질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실질채무는 **최근 3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정기채무상환('11년 205억)으로 3,467억원에서 3,262억원으로 205억원이 감소하였음**

지방채란?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합니다.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감액		
		계 (A=B-C)	발생액(B)	소멸액(C)
합 계		0	0	0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일시차입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세계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 일시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재정법 제14조)

3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A)	증감액			'1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36,293	122,312	318,776	196,464	758,605
일반회계		14,680	2,473	2,852	379	17,153
특별회계	소 계	616,001	119,937	313,263	193,326	735,938
	지역개발기금	517,814	119,255	297,146	177,891	637,069
	농어촌주택사업	98,187	682	16,117	15,435	98,869
	동부권특별회계	-	-	-	-	-
	의료급여기금	-	-	-	-	-
기금회계	소 계	5,612	△98	2,661	2,759	5,514
	중소기업육성기금	-	-	-	-	-
	남북교류협력기금	-	-	-	-	-
	농림수산발전기금	-	-	-	-	-
	환경보전기금	-	-	-	-	-
	자활기금	753	196	424	228	949
	재난구호기금	-	-	-	-	-
	노인복지기금	-	-	-	-	-
	여성발전기금	-	-	-	-	-
	재난관리기금	-	-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	-	-	-
	식품진흥기금	4,859	△294	2,237	2,531	4,565
	체육진흥기금	-	-	-	-	-
	통합관리기금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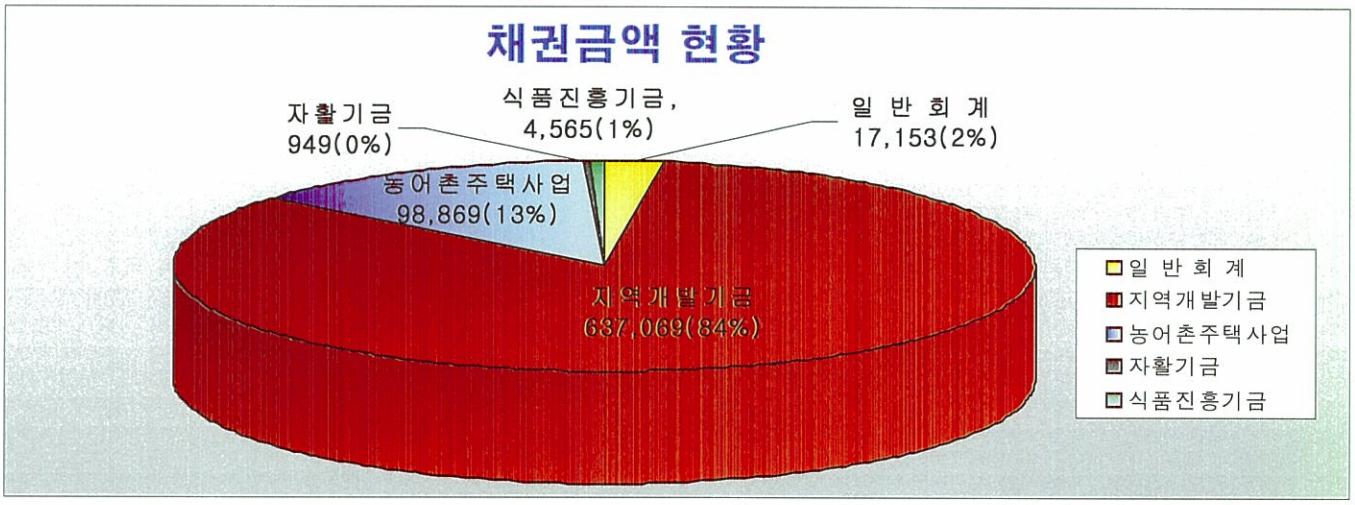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권현황	499,603	524,730	572,645	636,292	758,60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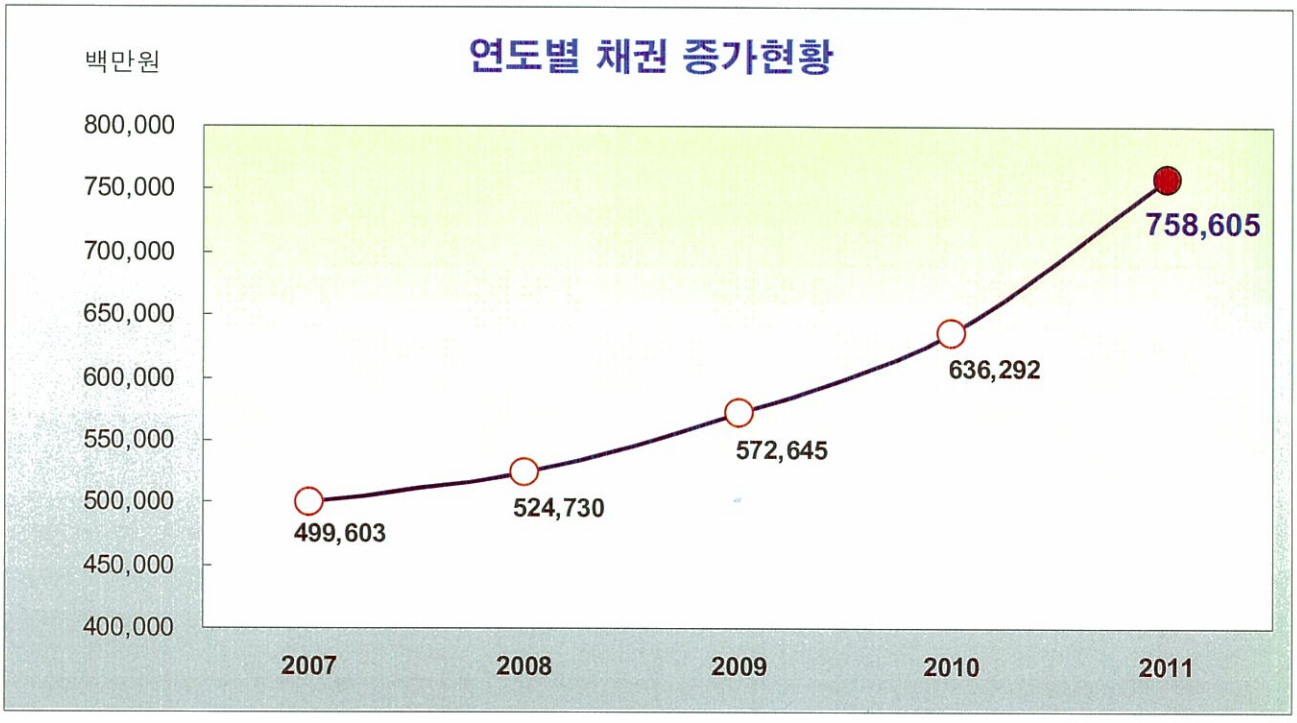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 증가로 전년대비 증가

4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종류별	'10년도 현재액 (A)	증감액			'11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247,787	1,330	31,481	30,151	249,117
중소기업육성기금	180,373	△1,391	20,281	21,672	178,982
남북교류협력기금	2,957	549	549	0	3,506
농림수산발전기금	18,521	692	1,432	740	19,213
환경보전기금	2,123	△39	62	101	2,084
자활기금	2,669	△284	311	595	2,385
재해구호기금	4,784	△157	653	810	4,627
노인복지기금	2,060	8	56	48	2,068
여성발전기금	1,145	25	101	76	1,170
재난관리기금	11,288	1,323	4,039	2,716	12,611
문화예술진흥기금	10,276	△162	1,795	1,957	10,114
식품진흥기금	5,457	627	2,063	1,436	6,084
체육진흥기금	6,135	139	139	0	6,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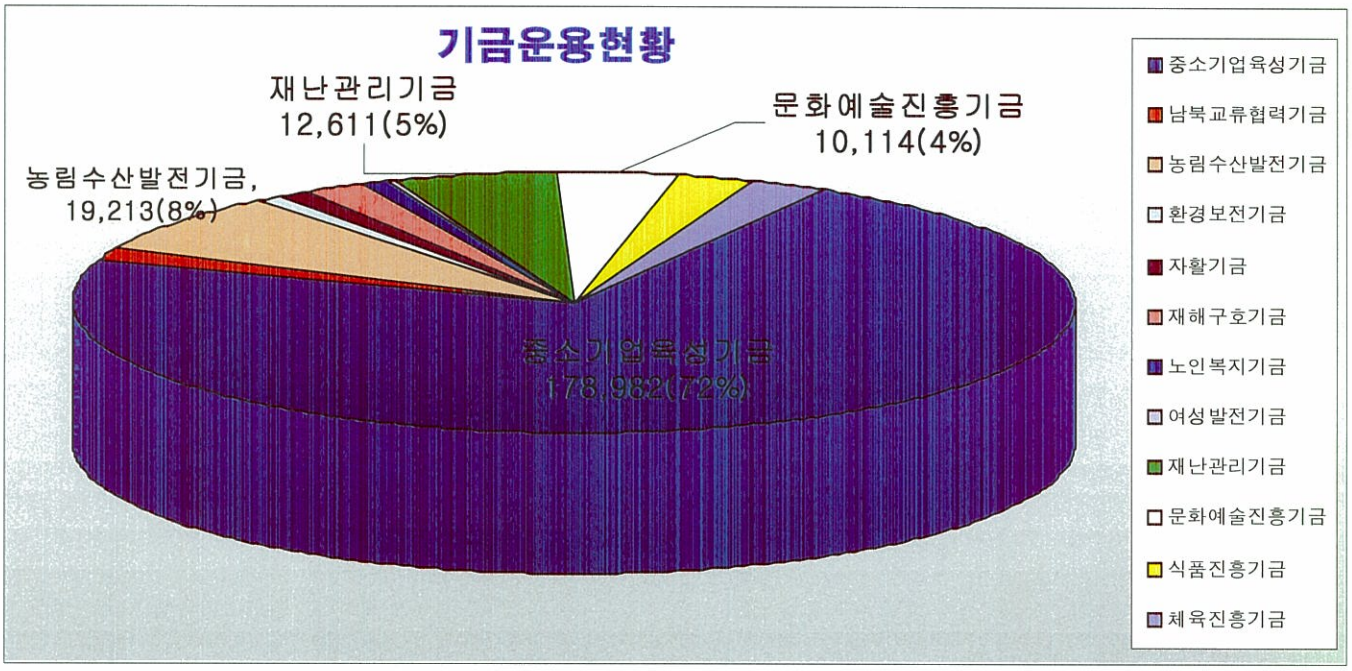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기금운용현황	197,769	207,424	248,042	247,787	249,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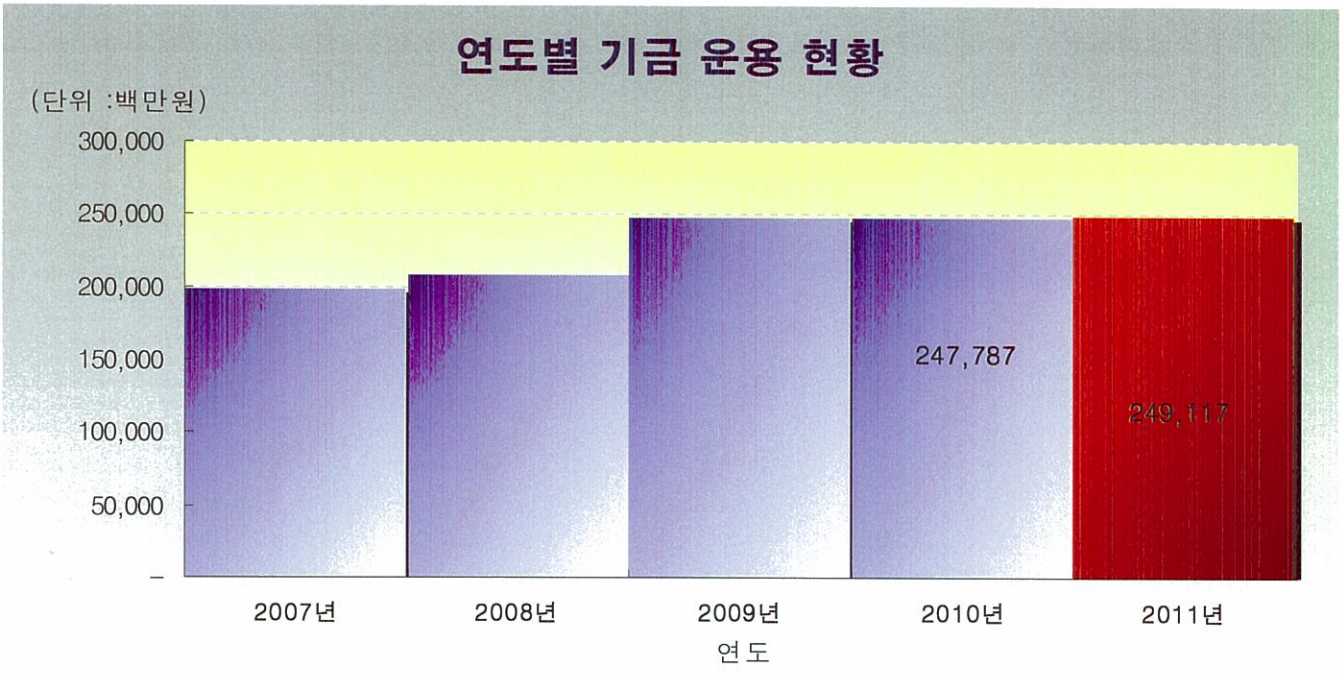

기금이란?

-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7,265,845	12,184,057	5,749	590,276	359	658,486	17,271,235	12,115,849	
토 지	90,312	465,967	878	530,150	303	651,297	90,887	344,820	
건 물	485	322,225	36	55,111	52	7,186	469	370,151	
입목죽	1,570	425	4,821	160			6,391	585	
공작물	50	1,676	4	96	1	2	53	1,770	
기계기구	51	15,819					51	15,819	
선 박	3	325	1	985			4	1,310	
항공기	1	1,802					1	1,802	
무체재산	4	4	4	188	3	1	5	191	
유가증권	17,173,342	85,867					17,173,342	85,867	
도 로		7,589,852		2,202				7,592,054	
하 천		3,696,789		721				3,697,510	
용익물건	27	3,306	5	663			32	3,970	

▸ '1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도로, 하천의 산정금액은 2011년도 재무보고서 인용

☞ '11년부터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를 종전의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는 방식"에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변경**되어 가액변경 증감사항 발생

※ 2010. 2. 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가격평가 등)」

나. 물 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073	43,814	513	4,473	477	28,380	2,109	19,906	
구 매	481	4,488	221	2,576	23	167	679	6,898	
관리전환	144	2,017	292	1,897	95	1,215	341	2,698	
기 타	1,448	37,309			359	26,998	1,089	10,311	

▸ '1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물품은 전년대비 36점 증가하였으나 '10년 12월 규정 개정으로 정수목록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방차 및 인명구조차 등 4개 품목 359점 270억원이 제외되어 물품현재액이 239억원 감소하였음

6 통합재정정보 (예산편)

(단위 : 백만원, '11년 최종예산기준)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 규모	통합재정 수지 (1)	통합재정 수지 (2)
	세입	지출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3,970,238	4,038,460	88,940	239,979	151,039	135,860	4,189,499	△219,261	△83,401
일반회계	3,648,656	3,616,806	-	1,024	1,024	39,144	3,617,830	30,826	69,970
기타 특별회계	296,159	362,437	7,100	11,270	4,170	1,296	366,607	△70,448	△69,152
공기업 특별회계	15,162	13,650	80,401	225,885	145,484	95,420	159,134	△143,972	△48,552
기 금	10,261	45,567	1,439	1,800	361	-	45,928	△35,667	△35,667

- '10년도는 기타 특별회계에 기금을 포함하였으나 '11년도부터는 기금 별도 분리 산출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란 ?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 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통합재정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직영)),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9	2010	2011
통합재정수지(1)	△243,134	△153,555	△219,261
통합재정수지(2)	△51,386	△10,513	△83,401

☞ 일반회계는 699억원의 흑자를 보인 반면 기금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적립하는 예치금의 지출로 적자를 보이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
(9개 광역도 평균 통합재정정보 현황 △1,409억원)

☞ '11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 이유는 세출부문에서 열악한 시군에 교부하는 자금이 '10년보다 1,207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와 기금 경우도 융자금 등의 지출로 전년도보다 919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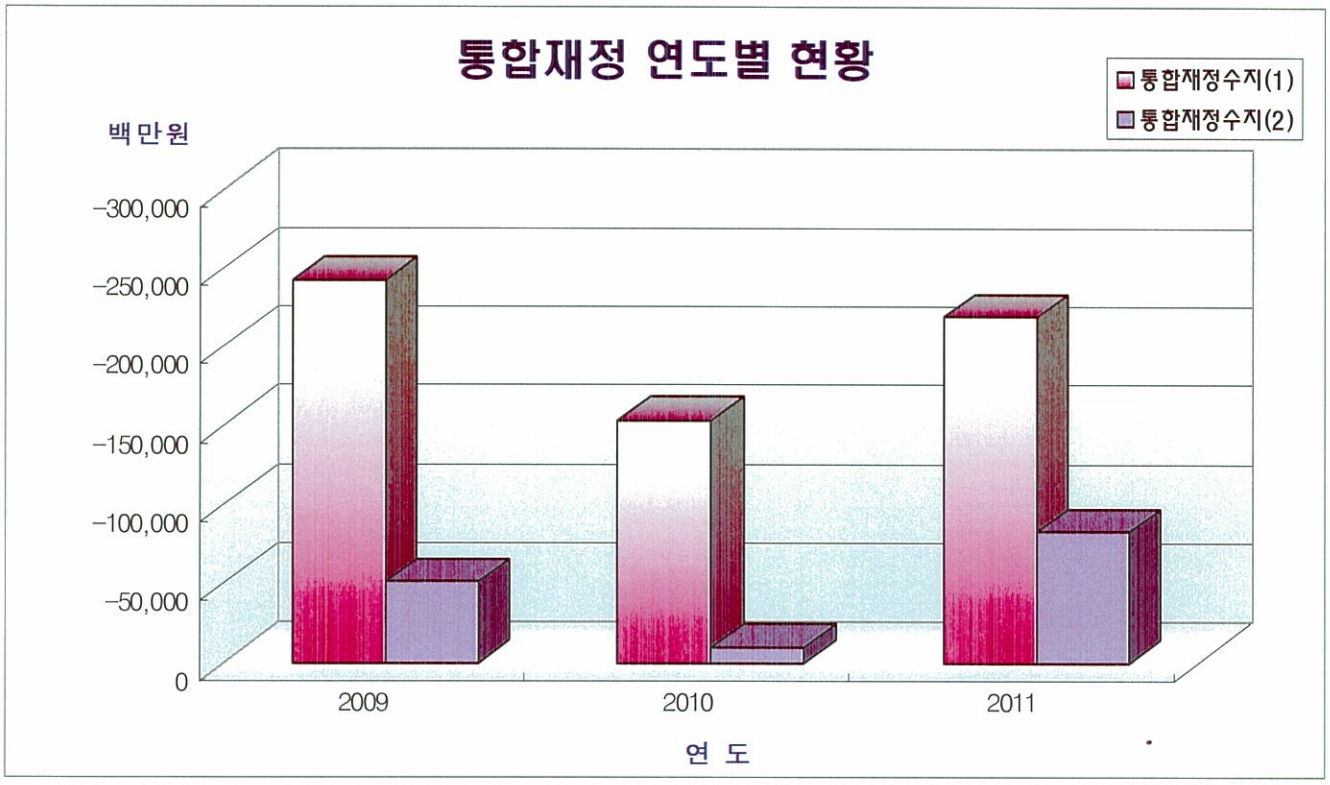

Ⅳ.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2011년 재정분석 결과)

각 지표별 ↑:높을수록, ↓:낮을수록, 100%달성 :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수치임

분 야(분석지표)			바람직한 방향	전라북도 지표값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9개도)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	-0.79%	-1.40%	-1.13%
		2. 경상수지비율	↓	73.83%	70.73%	70.82%
		3. 지방채무잔액지수	↓	39.48%	22.23%	42.49%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7.17%	2.96%	7.34%
		5. 장래세대부담비율	↓	5.74%	4.42%	8.13%
		6. 자체세입비율	↑	19.17%	28.79%	23.74%
		6-1. 자체세입 증감률	↑	33.79%	5.85%	35.49%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080%	0.9981	1.0035%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1335%	-0.3109	-0.215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2459%	1.0433	1.0970%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2052%	-0.0688	-0.1040%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1.0000%	0.9978	1.0003%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200%	0.0276	0,0328%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0772%	0.1334	0.0682%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1998%	0.2058	0.156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3076%	-0.0747	-0.0179%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0049%	-0.0280	-0.0530%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달성	100.01%	97.50%	99.35%
		18. 예산집행률	↑	95.73%	86.99%	94.90%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43.37%	44.37%	48.67%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100%달성	100.00%	58.09%	75.75%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자체심사 포함)	100%달성	100.00%	61.19%	78.00%

※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1년 재정분석 결과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특 징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②(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율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비율조합)	①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 총 평 〉

'11년 재정분석결과 우리 도는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 재정 건전성 분야

○ 재정건전성 평가항목 중 지방채무의 절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방채무잔액지수』** 채무상환에 따른 단기적 재정운영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지방채무상환비율』** 채무를 후손들에게 어느정도 빚으로 물려주느냐를 나타내는 **『장래세대부담비율』은 동종 광역자치단체보다 매우 낮아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재정 효율성 분야

○ 세입효율성 재정운용 노력 평가항목 중 지방세징수실적과 징수노력을 측정하는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는 동종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 세출절감 평가항목에서는 **『인건비 절감 노력도』,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모두가 고르게 동종 광역단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 계획성 분야

○ 재정운영 계획성 분야에서는 재정운영의 거시적 계획성을 측정하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 중 실제 예산편성 된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집행율』도 동종평균을 앞서 지표 전반에 걸쳐 동종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음**

▣ 지표별 분석

☞ 각 지표상(↑ ↓) 표시는 각 수치가 화살표 방향 일수록 좋은수치임

건정성 비교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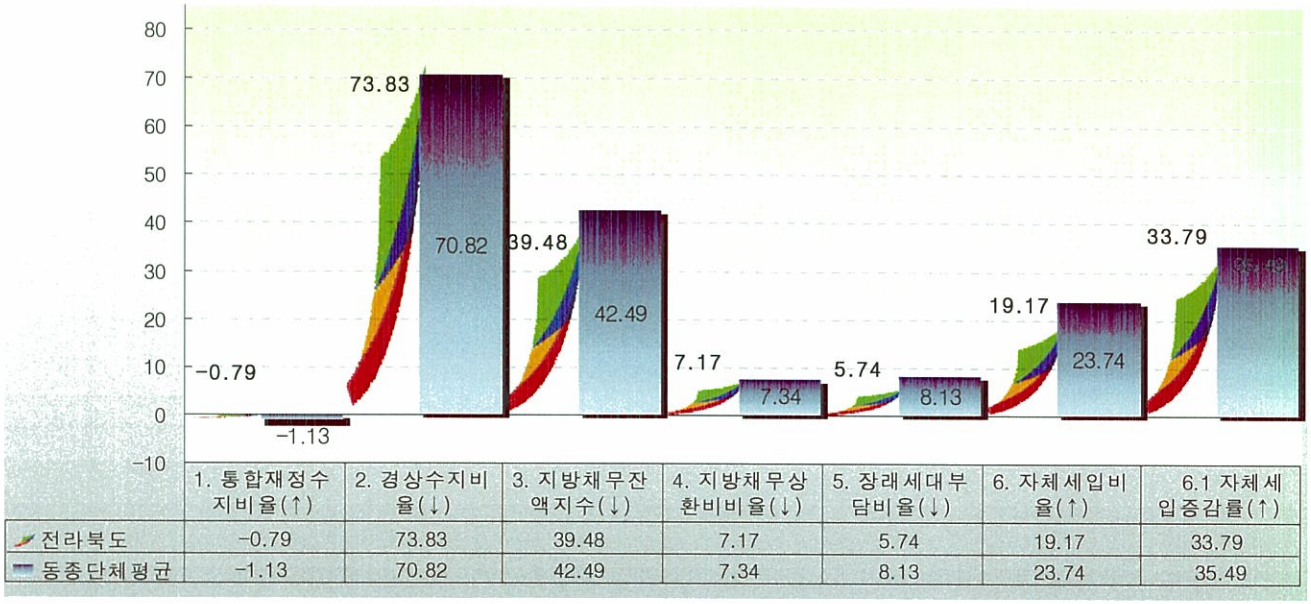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지방채무잔액지수(↓)	4. 지방채무상환비율(↓)	5. 장래세대부담비율(↓)	6. 자체세입비율(↑)	6.1 자체세입증감률(↑)
전라북도	-0.79	73.83	39.48	7.17	5.74	19.17	33.79
동종단체평균	-1.13	70.82	42.49	7.34	8.13	23.74	35.49

▸ 동종자치단체(9개도)와 비교시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우수하나 통합재정수지비율, 자체세입비율은 조금 낮은편임

세입 효율성 비교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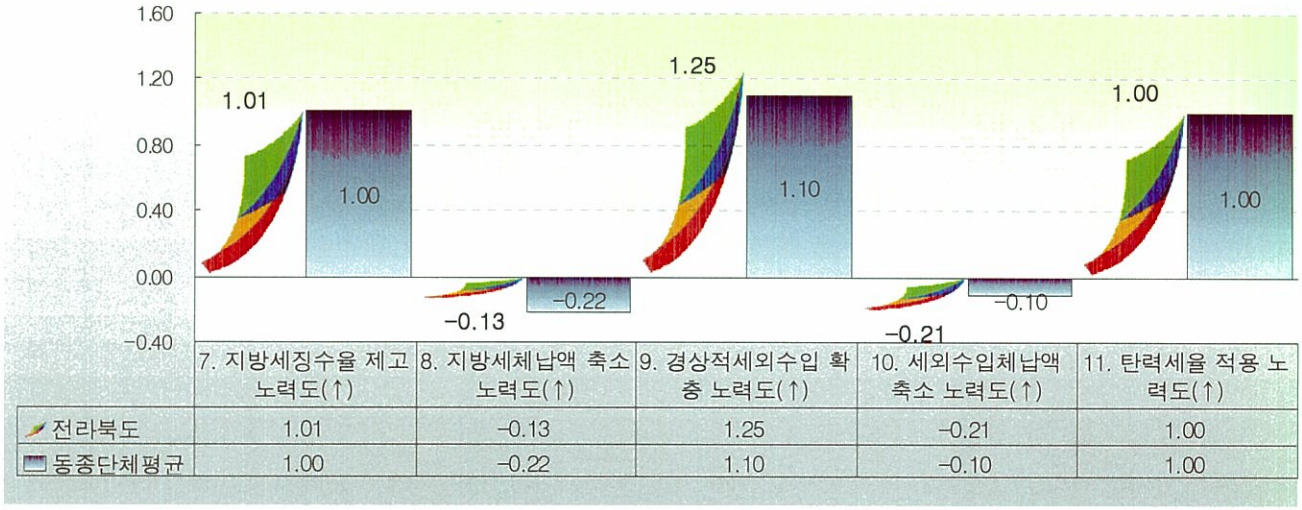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9.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전라북도	1.01	-0.13	1.25	-0.21	1.00
동종단체평균	1.00	-0.22	1.10	-0.10	1.00

▸ 동종자치단체(9개도)와 비교시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와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는 동종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지방세체납액 축소,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는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편임

세출절감 효율성 비교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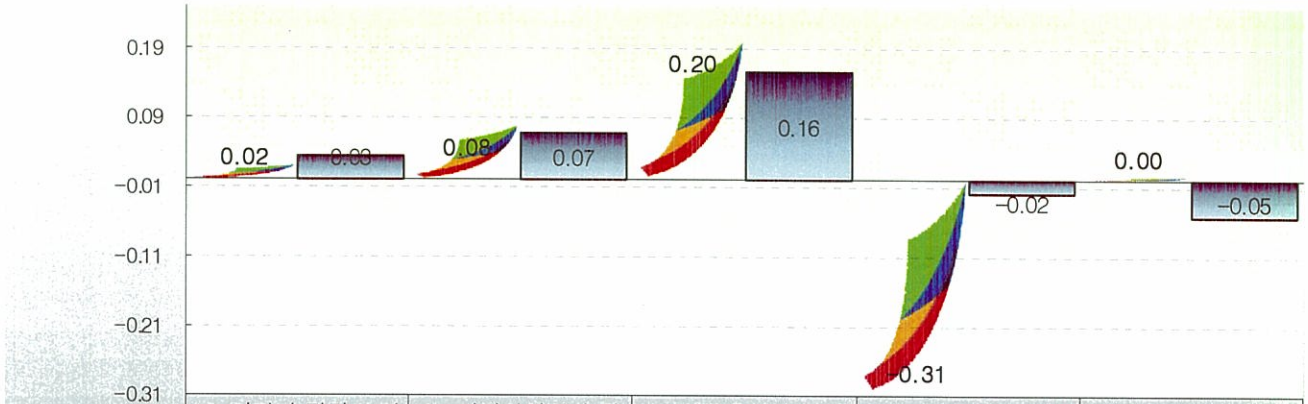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전라북도	0.02	0.08	0.20	-0.31	0.00
동종단체평균	0.03	0.07	0.16	-0.02	-0.05

▸ 동종자치단체(9개도)와 비교해 보면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하나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따른 새만금 깃발 축제 개최 등으로 행사 축제경비 지출이 증가하여 타시도에 비해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낮은 편임

계획성 비교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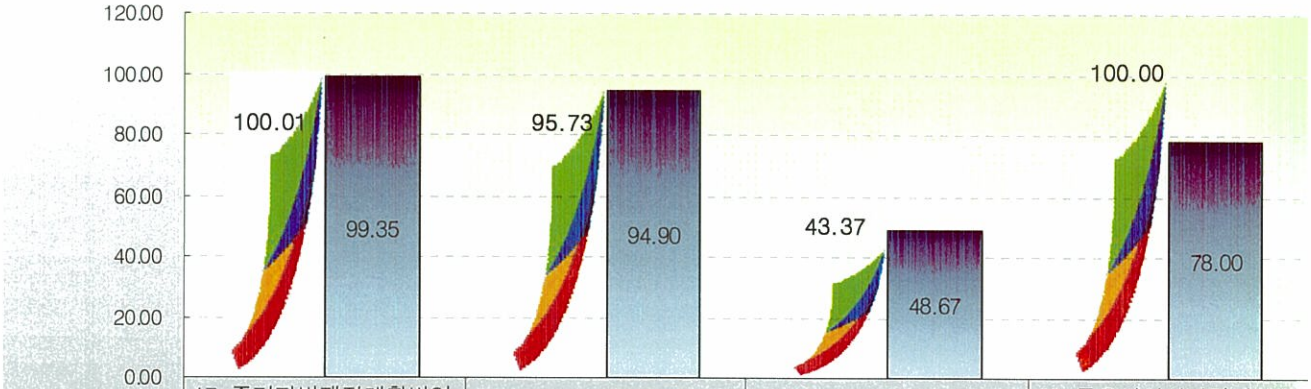

	17.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100%달성)	18. 예산집행률(↑)	19. 정책사업투자비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100%달성)
전라북도	100.01	95.73	43.37	100.00
동종단체평균	99.35	94.90	48.67	78.00

▸ 동종자치단체(9개도)와 비교해 보면 모든 지표에서 우리도가 우수함

2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감사주체	지적사항	조치지시내용	처리결과
감사원	주민편익증진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합리적 기준없이 포괄사업비 형태의 주민편익 증진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집행 업무를 철저	'11년에는 포괄사업 형태의 주민편익 증진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12년부터 포괄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적인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편성 운용

3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3,706,370	220,327	5.94%	
인건비 (101)	보수(101-01)		169,519	4.57%	
	기타직보수(101-02)		6,043	0.16%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3,331	0.09%	
직무 수행경비 (204)	직급보조비(204-02)		6,634	0.18%	
포상금 (303)	성과상여금(303-02)		8,594	0.23%	
연금 부담금등(304)	연금부담금(304-01)		20,433	0.55%	
	국민건강보험금 (304-02)		5,773	0.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보수(101-01)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561,006	2,957,545	3,536,005	3,472,646	3,706,370
인건비	181,154	195,118	201,809	210,160	220,327
비율(%)	7.07%	6.60%	5.71%	6.05%	5.94%

▸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고, '10년부터 총액 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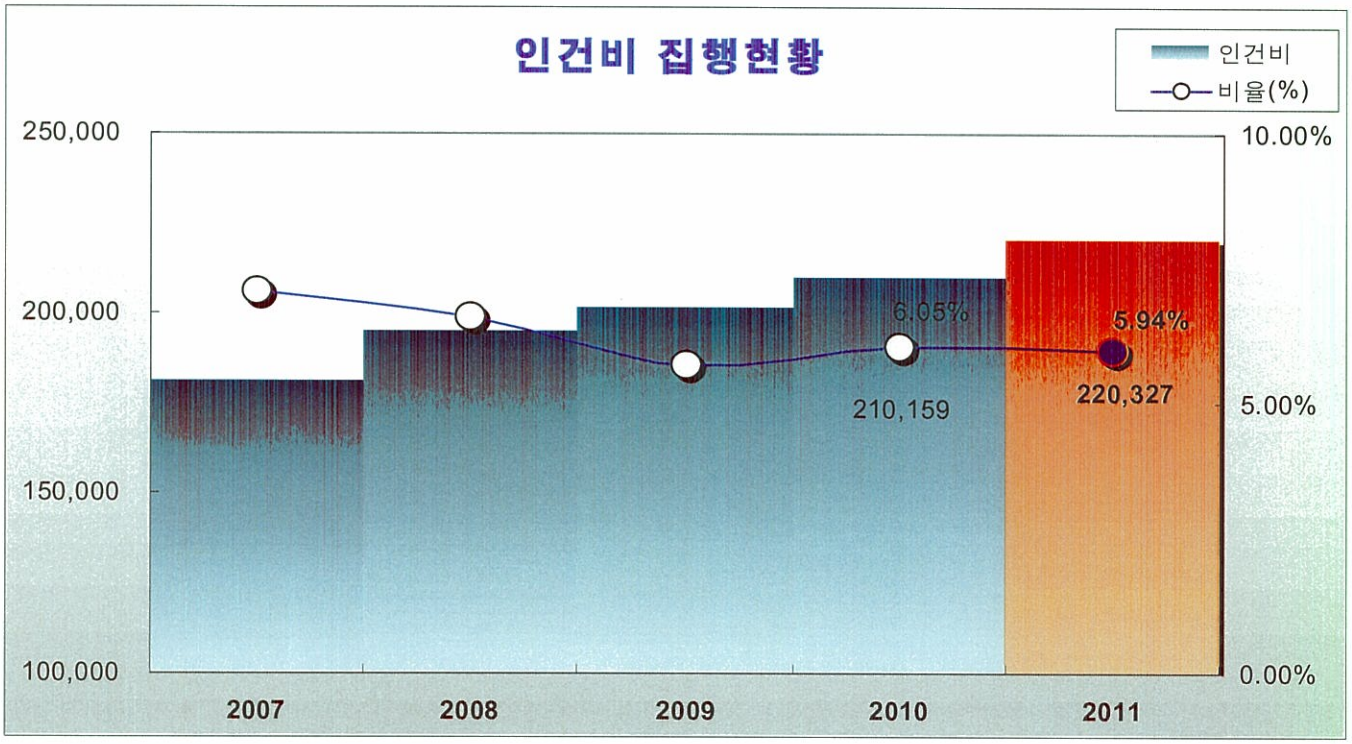

☞ 공무원인건비 주요 증가 사유

- 2011년 정부예산안에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반영**(총보수액의 5.1%)됨에 따라 인건비 처우개선율 반영 및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를 위한 직원 충원** 등으로 2010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함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3,706,370	2,216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706,370	792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424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561,006	2,957,545	3,536,005	3,472,646	3,706,370
업무추진비	2,404	2,453	2,238	1,990	2,216
비율(%)	0.09%	0.08%	0.06%	0.06%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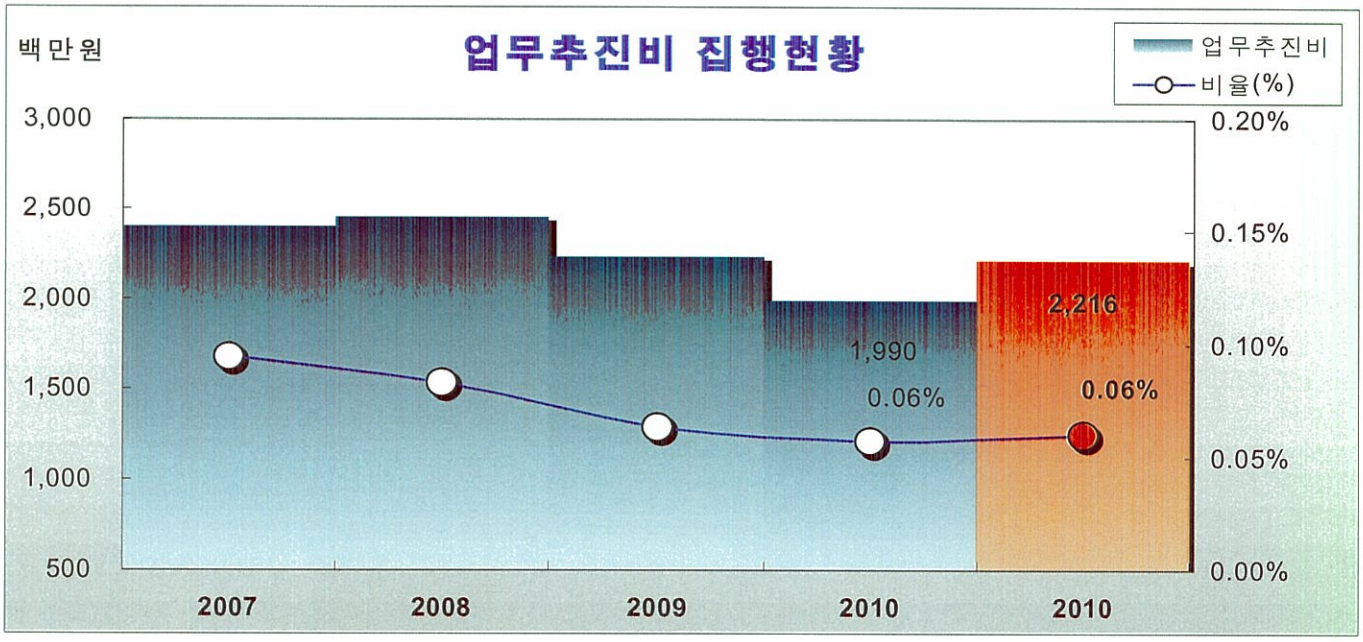

☞ 업무추진비가 '10년대비 증가한 이유는 '11년도 편성은 동일하게 하였으나 '10년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5% 삭감하였기 때문임

※ '11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우리도 (실링) 1,656백만원 → (편성) 1,444백만원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3,706,370	3,008	0.08%	
의회비 (205)	의정활동비(205-01)	3,706,370	765	0.02%	
	월정수당(205-02)		1,326	0.04%	
	국내여비(205-03)		206	0.01%	
	국외여비(205-04)		97	0%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301	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197	0.01%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44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33	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		40	0%	

- ▸ 의원 정원 : 43명('11.12.31일 현재)
-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561,006	2,957,545	3,536,005	3,472,646	3,706,370
의회경비	2,317	2,554	2,573	2,650	3,008
비율(%)	0.09%	0.09%	0.07%	0.08%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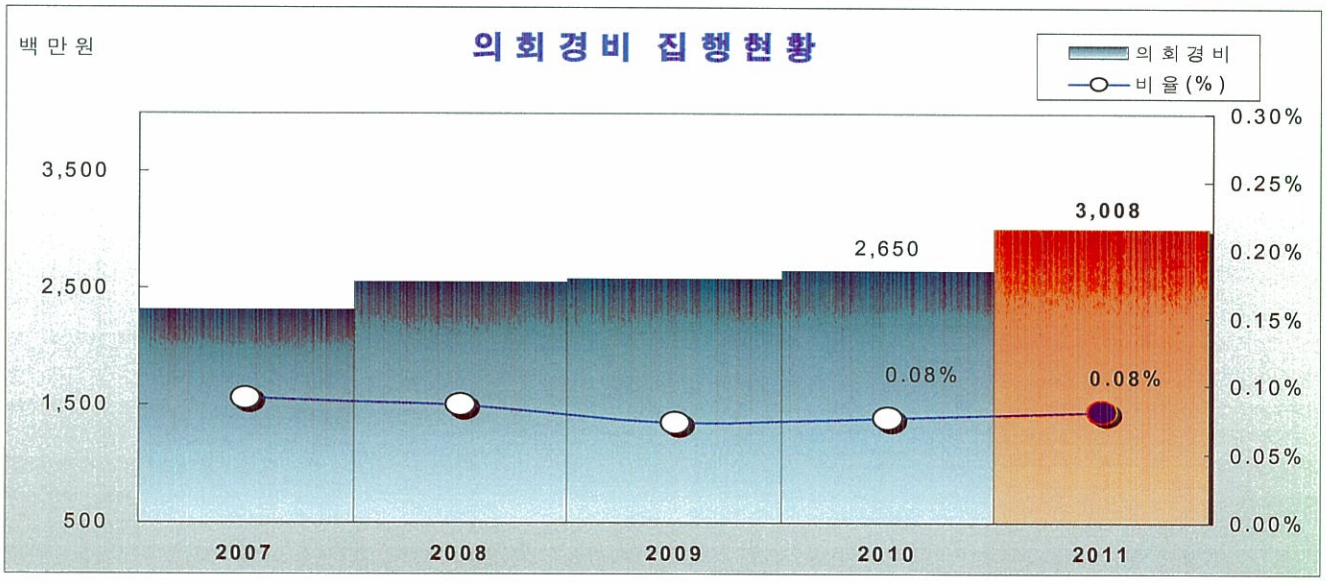

☞ 의원수 증가로 2010년보다 지방의회 경비가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 (38명 → 43명)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3,706,370	9,065	0.24%	
행사운영비(201-03)	3,706,370	4,864	0.13%	
행사실비보상금(301-10)		570	0.02%	
민간행사보조(307-04)		3,604	0.10%	
행사관련시설비(401-04)		27	0%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560,060	2,957,545	3,536,005	3,472,646	3,706,370
행사·축제경비	5,505	5,368	6,861	8,831	9,065
비율(%)	0.22%	0.18%	0.19%	0.25%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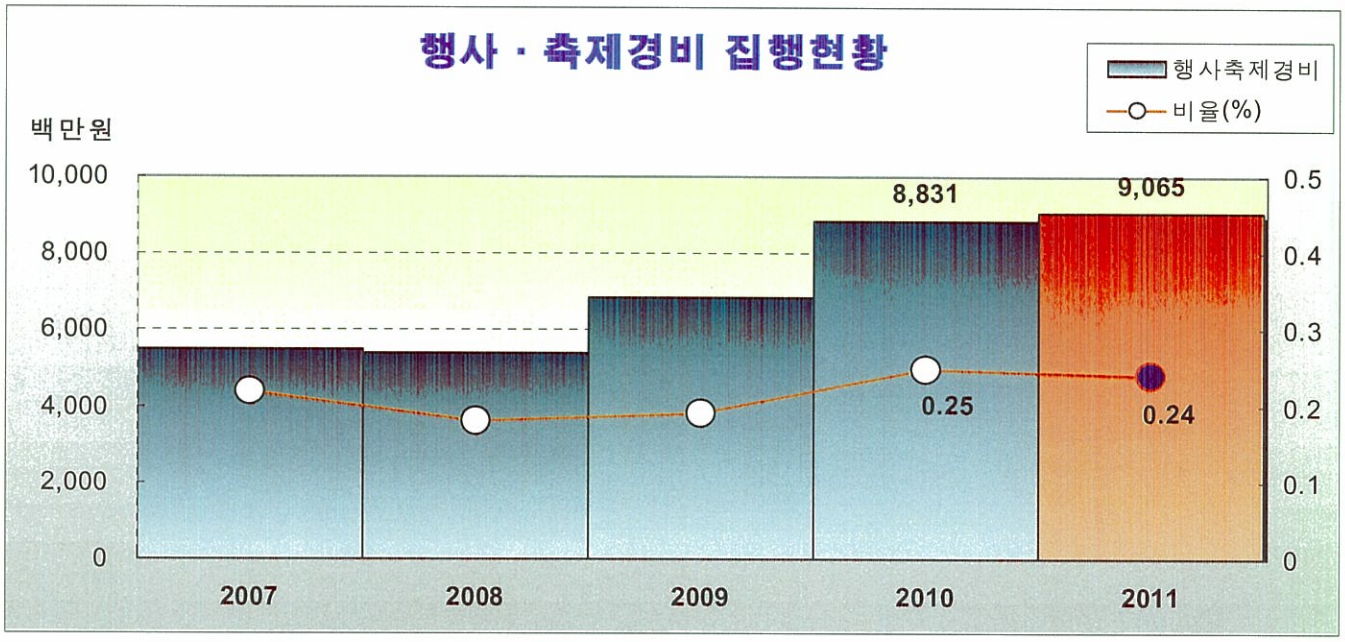

☞ '10년 새만금방조제 준공 이후 새만금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새만금 상설야외 공연장 운영(20억), 여수박람회 전북관 설치비(4억) 등으로 행사운영비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은 소폭 감소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민간단체보조금(B)	비율(B/A)	비 고
합 계	3,706,370	66,281	1.79%	
민간경상보조(307-02)	3,706,370	61,319	1.65%	
사회단체보조(307-03)		1,358	0.04%	
민간행사보조(307-04)		3,604	0.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561,006	2,957,545	3,536,005	3,472,646	3,706,370
민간단체 보조금	58,441	62,930	62,809	61,526	66,281
비율(%)	2.28%	2.13%	1.78%	1.77%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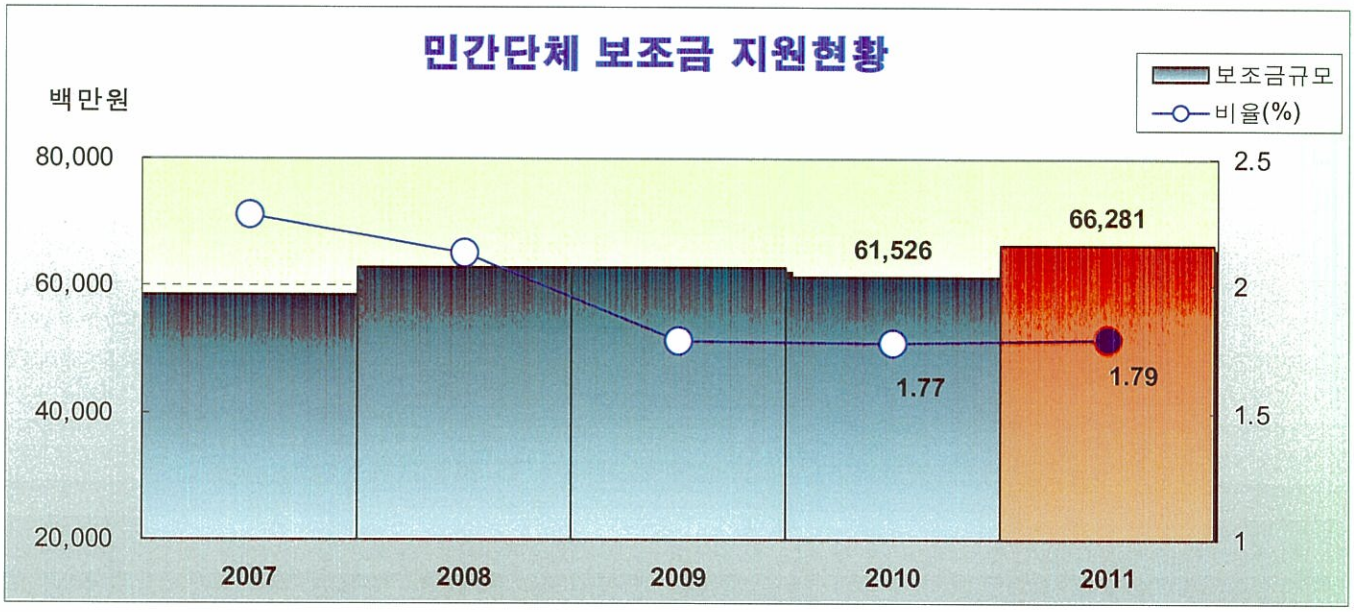

☞ 중앙에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사업과 차세대 미래산업인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가 직접 지원에 따른 매칭 펀드 사업 증가로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증가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계		3,706,370	9,351	0.25%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3,706,370	4,158	0.11%	
	공공운영비(201-02)		926	0.02%	
여비	국내여비(202-01)		862	0.02%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792	0.02%	신규추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160	0%	신규추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723	0.02%	신규추가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706	0.02%	신규추가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1,025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변경전	변경후
세출결산액	2,957,545	3,536,005	3,472,646	3,706,370	
기본경비	9,930	9,587	6,401	6,970	9,351
비율(%)	0.34%	0.27%	0.18%	0.19%	0.25%

▸ '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 실시, '07년도 이전은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음.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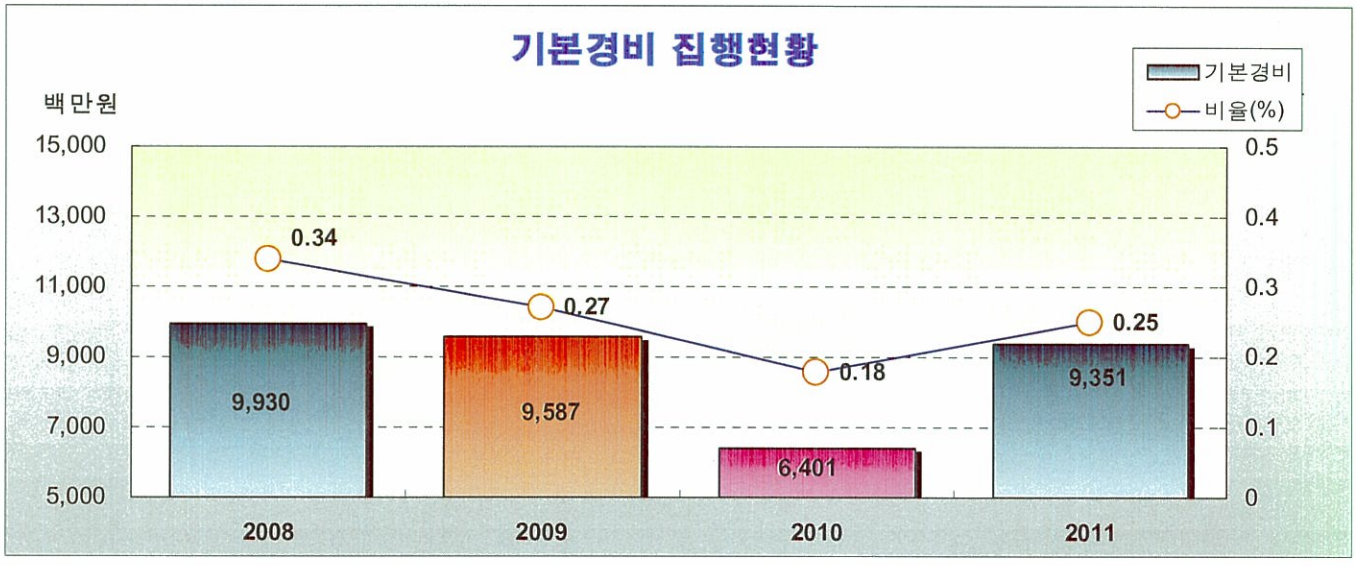

☞ 총액인건비 범위가 달라져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기본경비 항목에 일부항목 추가(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전년도 대비 증가

③-7. 출연금, 출자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연금		출자금		비 고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합 계	4,413,776	38,499	0.87%	0%	0%	
일반회계	4,413,776	38,499	0.87%	0%	0%	

▸ '11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A)	3,170,167	3,517,696	4,073,356	4,024,614	4,413,776
출연금(B)	50,016	34,253	62,039	40,295	38,499
비율(B/A)(%)	1.58%	0.97%	1.52%	1%	0.87%
출자금(C)	0	0	0	0	0
출자금 총액(D)	0	0	0	0	0
비율(C/A)(%)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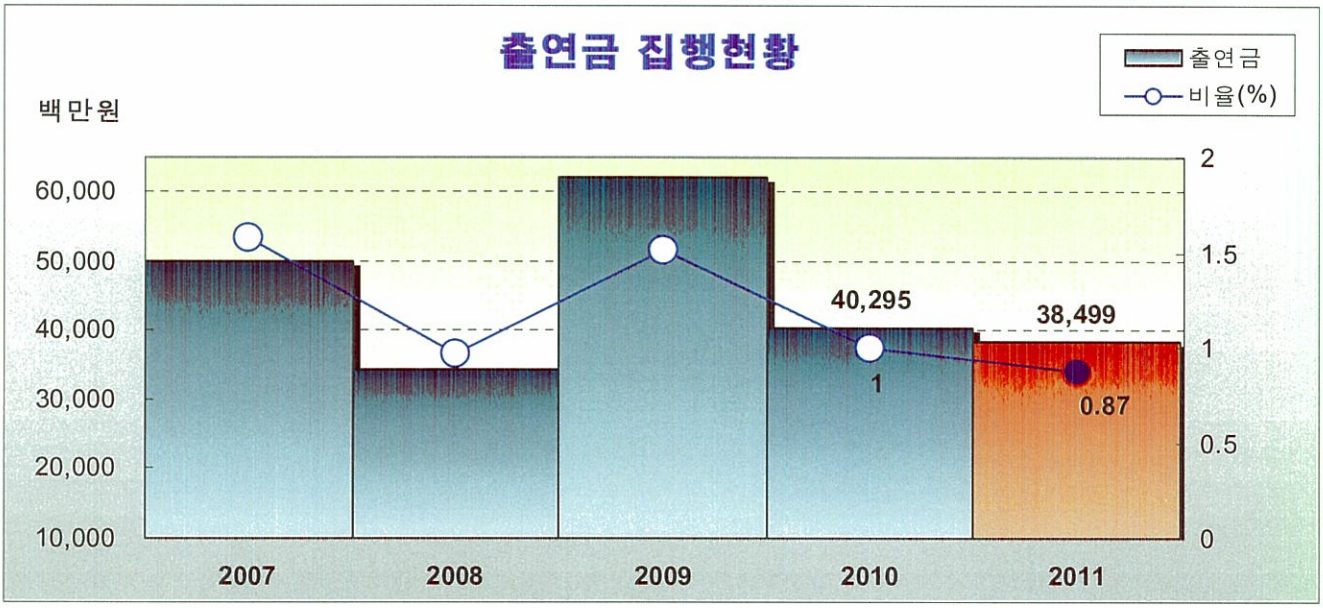

☞ 부품소재산업 기반구축 사업 중 초경량 고강도 대형박육부품 생산기반 구축 (55억) 사업 완료로 전년도 대비 감소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도본청 기준)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1년	686	197,707	153	9,162	22.3%	4.6%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 도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 실적은 20,581백만원임

※ '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000만원 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수의계약 실적	건수	104	109	132	153
	금액	6,247	8,656	8,621	9,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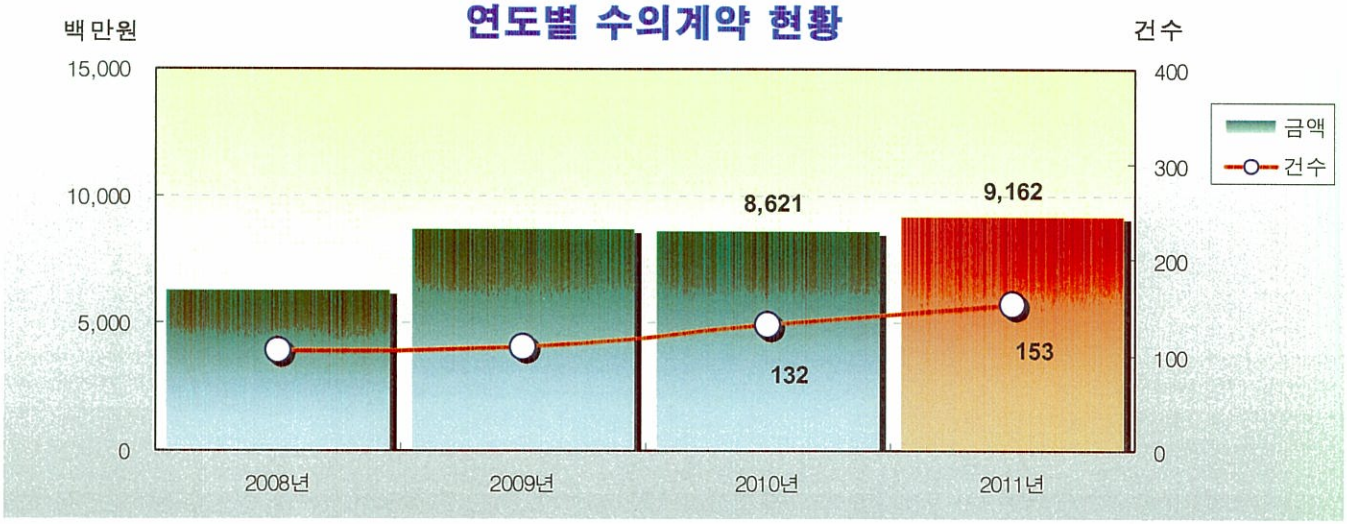

☞ 2009년부터 중앙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예산 집행권한 위임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증가함

(조기집행 '09~'12년까지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160,372	10,484	6.54%
시설비(401-01)	154,479	10,262	6.64%
감리비(401-02)	5,466	84	1.54%
시설부대비(401-03)	400	131	32.79%
행사관련시설비(401-04)	27	7	25.9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11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A)	196,862	173,606	146,655	160,372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30,344	17,499	17,545	10,484
비율(%) (B/A)	15.4%	10.08%	11.96%	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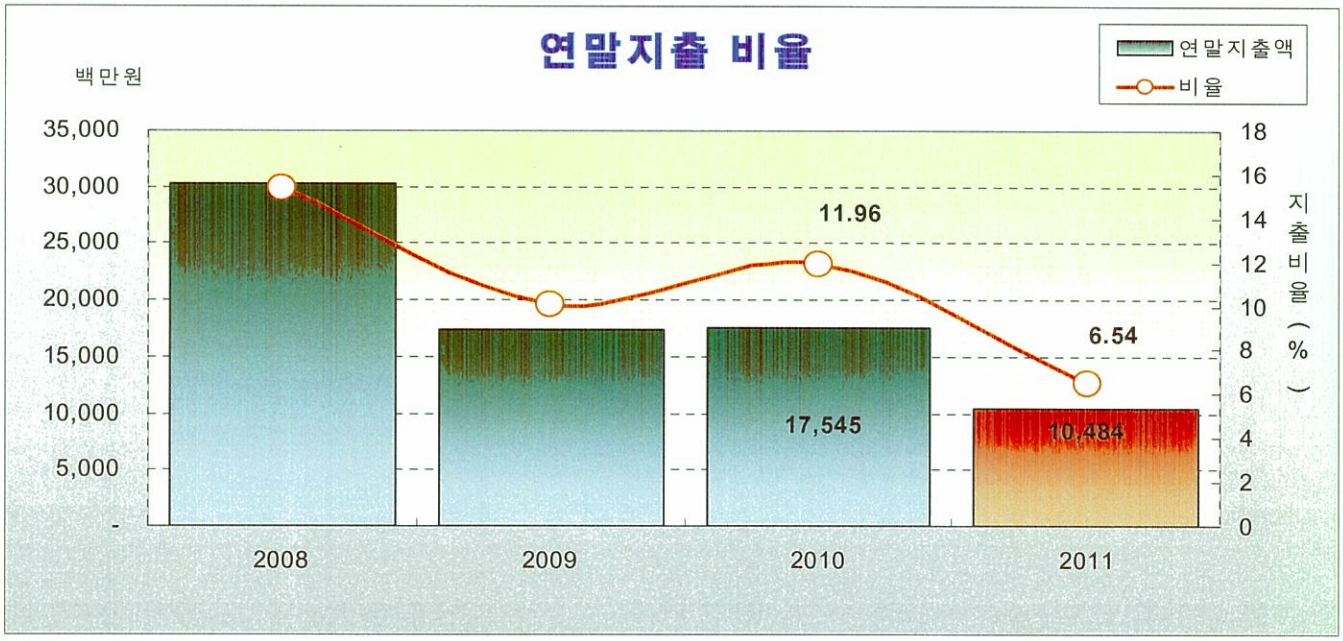

☞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재정조기집행 추진등으로 연말지출비율 대폭 축소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비과세·감면액 (A)		262,759	248,689
	비과세	25,409	41,543
	감면	237,349	207,145
지방세 징수액 (B)		731,809	647,721
비과세·감면율 (A/A+B)		26.42%	27.74%

◈ 세목별 현황 ('11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면		
합 계		**262,759**	**238,605**	**25,409**	**213,196**	**6,191**	**17,962**
보통세	소 계	258,224	234,150	23,191	210,959	6,112	17,962
	취득세	253,864	230,185	22,894	207,290	6,096	17,583
	등록면허세	4,360	3,965	296	3,669	16	379
목적세	소 계	4,534	4,455	2,219	2,237	79	0
	지역자원시설세	4,534	4,455	2,219	2,237	79	0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2011년도 (A)	구성비(%)	2010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262,759	100.00%	248,689	100.00%	14,070	5.66%
일반공공행정	7,469	2.84%	9,955	4.00%	△2,486	△24.97%
공공질서 및 안전	132	0.05%	17	0.01%	116	696.78%
교육	3,233	1.23%	5,449	2.19%	△2,216	△40.67%
문화 및 관광	5,414	2.06%	5,860	2.36%	△446	△7.61%
환경보호	3	0.00%	0	0.00%	3	0.00%
사회복지	143,664	54.68%	83,452	33.56%	60,212	72.15%
보건	775	0.30%	421	0.17%	355	84.28%
농림해양수산	19,283	7.34%	15,884	6.39%	3,399	21.40%
산업·중소기업	30,857	11.74%	59,751	24.03%	△28,894	△48.36%
수송 및 교통	5,132	1.95%	4,187	1.68%	945	22.56%
국토 및 지역개발	28,155	10.72%	41,685	16.76%	△13,530	△32.4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990	2.66%	13,650	5.49%	△6,660	△48.7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1,650	4.43%	8,378	3.37%	3,273	39.06%

지방세지출보고서란?

-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취득세(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B)	맞춤형 복지비(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2011년	3,939	3,706,370	4,588	0.12%	1,1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 복지비 : '11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비 고
	2009	2010	2011	
대상인원(A)	3,545	3,667	3,939	
세출결산액(B)	3,536,005	3,472,646	3,706,370	
맞춤형 복지비(C)	3,256	3,762	4,588	
비율(%) (C/B)	0.09%	0.11%	0.12%	
1인당 평균배정액(C/A), 천원	919	1,026	1,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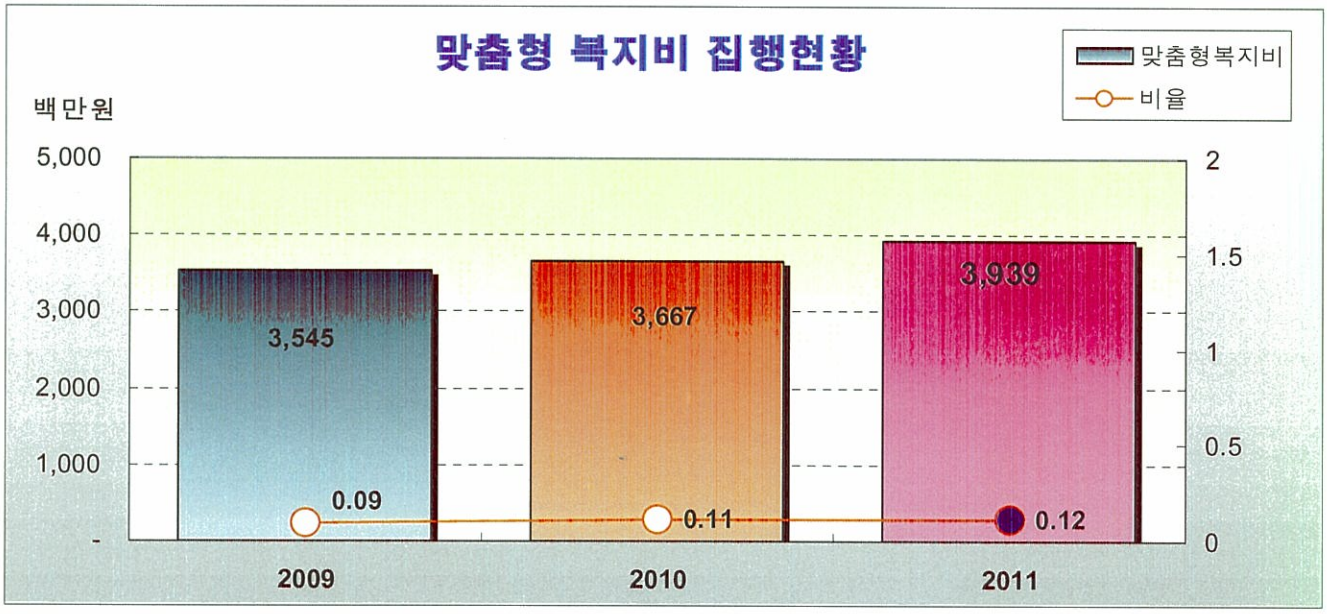

☞ 소방공무원 충원 및 맞춤형 복지비 일부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사회 복지일반 (089)
계	982,482	348,278	105,817	217,408	272,118	21,353	838	16,670
국 비	758,846	269,009	73,051	149,809	243,065	11,440	30	12,443
도 비	223,636	79,269	32,766	67,599	29,053	9,913	808	4,2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 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957,545	3,536,005	3,472,646	3,706,370
사회복지분야	790,090	997,036	954,136	982,482
비율(%)	26.71%	28.2%	27.48%	26.51%

※ 보건복지비 553억 포함하면 10,378억(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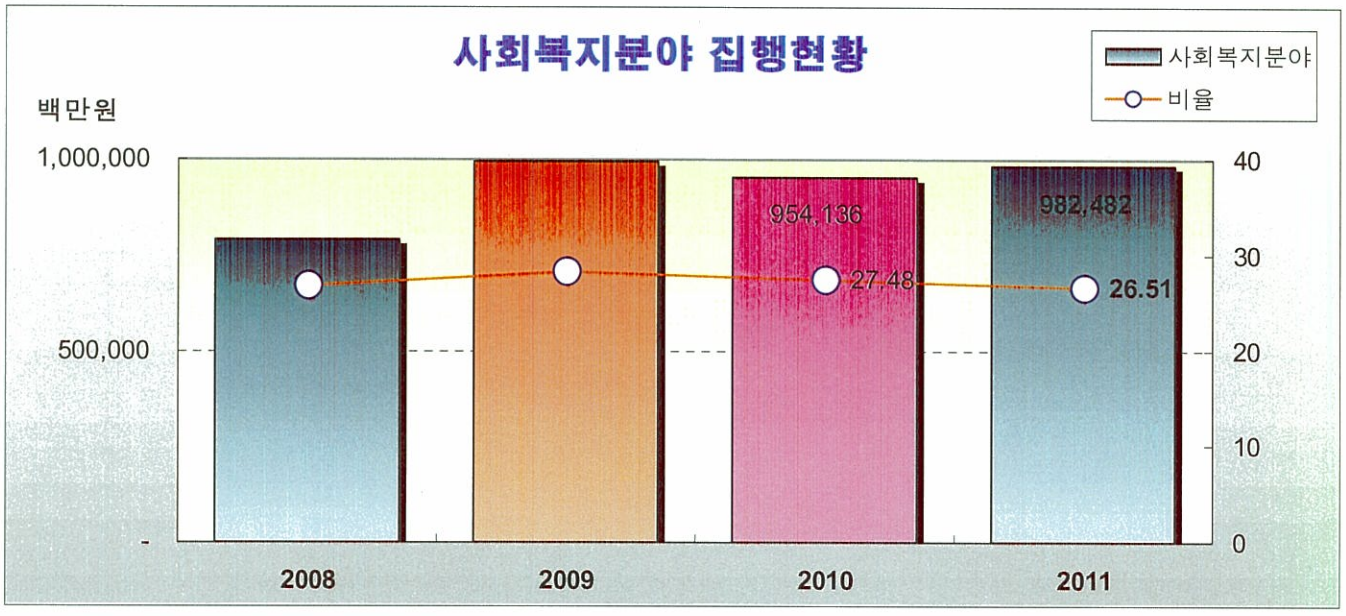

☞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수요 증가로 전년도 대비 증가

③-13. 보증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계	0	0	0	0	0	0	

▸ '11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부담행위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 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지방재정법 제13조)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24,323,392	4,444,781	4,616,910	4,823,836	5,084,175	5,353,690	4.80%
자체수입	5,866,152	1,095,404	1,105,532	1,153,339	1,222,581	1,289,296	4.20%
의존수입	17,553,440	3,168,577	3,322,378	3,497,497	3,683,594	3,881,394	5.20%
지 방 채	903,800	180,800	189,000	173,000	178,000	183,000	0.30%
② 세 출	24,323,392	4,444,781	4,616,910	4,823,836	5,084,175	5,353,690	4.80%
경상지출	3,161,185	543,795	576,110	622,751	695,579	722,950	7.40%
사업수요	21,162,207	3,900,986	4,040,800	4,201,085	4,388,596	4,630,740	4.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 100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수정)계획 수립

2011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지출월	집행내역	금액
계		1,424
1월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 개최 간담회, 신발전지역 및 내륙초광역개발권 지정 대응 전문가 간담회,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및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간담회, 전북10대 성장동력산업 추진 등	74
2월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신년 간담회, 새만금 현안업무 추진 관계자 오찬,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국회관계자와 만찬,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간담회 개최 등	117
3월	전라북도 혁신도시 조성 업무추진 관계자 격려 오찬, 제3회 전라북도지방자치정책협의회 개최에 따른 만찬, 일본 대지진 발생에 따른 전북경제 긴급대책 간담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간담회 등	107
4월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계자 격려 오찬, 공공기관 효율적 재배치 관련 현안 설명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 새만금 투자유치 홍보관련 관계자와 간담회 등	106
5월	식량·작물 부문 사업추진 관계자 간담회, 사회복지 부문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간담회, LH본사 분산유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단체와 간담회, 중국특화 프로젝트 추진관련 중국관계자 지역특산품 구입 전달	101
6월	문화관광건설위원 간담회,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방안 간담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관 간담회, 대중교통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상수도 및 수질개선을 위한 광역상수원지킴이 업무추진 등	90
7월	LH일괄이전에 따른 세수보전방안 등 설명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업무 추진, 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연찬회 등	92
8월	신생 프로야구단 유치 등 현안 설명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을지연습참여 유관기관 및 중앙평가단과 만찬, 지역브랜드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참가에 따른 오찬 등	94
9월	재정조기집행 도내 우수지자체 관계자 격려 오찬,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준비 관계자 격려, 연구개발(R&D) 기관장 간담회, 2012년 신규시책 추진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	131
10월	동부권 발전사업 협의를 위한 시군 관계자와 만찬,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업무추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유치를 위한 SK재단 방문 등	87
11월	투자유치를 위한 수도권기업 관계자와 간담회, 전라북도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만찬간담회 경비 지출, 2011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회의 개최, 전북과학기술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간담회 등	163
12월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초청 의견수렴 간담회, 2011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와 만찬,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관계자 오찬, 농산물 우수가공식품산업 육성 간담회 등	260

2011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지출월	집행내역	금액
계		3,604
1월	2011 전주세계소리축제 도비 지원	1,000
	2011 세계서예비엔날레행사 지원	700
	찾아가는 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25
2월	2011 전북독립영화제 지원	30
3월	2011 한국음식관광축제 지원	300
	외국인 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운영	150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지원	3
	2011 수산업 경영인 지원	2
4월	제27회 전북연극제 개최	40
	2011 전북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	24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행사 지원	3
	2011 수산업 경영인 지원	2
5월	2011 한국관광총회 개최에 따른 지원	167
	2011 꿈나무 축구대회 지원	27
6월	6.25전쟁 제61주년 기념행사 지원	40
	제29회 전국연극제 지원	20
	제12회 영호남 관광교류전 보조금 교부	9
	2011 한국음식관광축제 도비 2차 교부	200
	국제교류서포터즈단 워크숍 개최	20
7월	제20회 전북무용제 보조금 교부	40
	제1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17
	2011 어린이 경제리더십 캠프 지원	10
	제2회 몽골 나눔축제 행사 운영 보조	3

지출월	집행내역	금액
8월	제52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보조금 지원	41
9월	2011 이북5도민 체육대회 참가지원	3
	전주세계소리축제 도비 추가분 지원	500
	제5회 한중 연해지역 관광포럼	40
	2011 출향도민 초청행사	27
	주한외국인 오피니언리더 초청행사	27
10월	제20회 전국무용제 지원	20
	무주 태권도 공원 민자유치 북미지역 투자설명회 IR 참가 지원	11
	2011 다문화가족 어울림 축제	30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정주여건조성 워크숍	24
11월	제38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 지원	6
	2011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성강화 워크숍 행사 보조	10
	제6회 희망나무 사랑예술제 지원	12
	전북언론관계관 소통 워크숍(사진기자협회)	10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에 따른 전북 연수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11

2011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지출월	집행내역	금액
계		61,319
1월	전라북도체육회 지원,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교부, 전몰군경유족회·특수임무수행자회·광복회·무공수공자회 전북지부 지원, 암전문연구센터, 새만금 국제포럼 개최 지원 등	5,833
2월	2011 기업맞춤형 ebiz마케팅 지원 전기차 급속충전시스템 개발사업 지원,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사업 도비 보조, "eco-인쇄전자 사업화 촉진, 풍력에너지전력망 적응기술 연구센터 지원 등	5,661
3월	'11년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제3기 산학관커플링사업 보조금 교부, 2011년도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 청소년 종합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14,075
4월	항공인력양성사업 도비 보조, 2011년도 IT특화연구소 사업 지원, 2011년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양성사업 보조, 문화복지관람권(문화바우처) 보조, 2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비 지원 등	5,886
5월	전통시장 홍보사업 보조, 친환경부품소재 일자리창출 지원, 중소기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2011년 LOHAS지향 식품산업 마케팅 활성화사업 보조, 2011년 강살리기 추진지원,	2,471
6월	2011년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지원, 2011년 전북 우수중소기업인상 경영개선 보조,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 2011년도 IT특화연구소 사업 보조,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단사업 지원 등	9,538
7월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 및 활용사업 제2차년도 도비 보조,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보조,2011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지원, 친환경안전축산 직접지불사업 지원 등	5,049
8월	전라북도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도비 보조, 방사선산업활성화기업지원사업,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보조, 2011년 한우광역브랜드화 사업 지원, 향토음식육성사업 지원 등	2,835
9월	친환경부품소재 인력양성사업 지원, Buy전북상품 및 우수상품 판매장 운영지원, 전북미아실종예방본부 사업비 교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2,680
10월	기업채용 종합지원사업 지원, 2011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전북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 2011년 농어촌소규모보육서비스 제공 사업비 지원 등	2,862
11월	일자리+우수기업 도비 보조, 2011 유연인쇄전자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원, 환경친화형배합사료자금지원 등	3,088
12월	한국전통소리문화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오픈API구축사업 보조금 교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 2011년도 수산업전문가양성과정 지원 등	1,341

2011년 출연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백만원/일반회계)

기관·단체명	근거 (법·조례명 등)	금액	지원내용
		38,499	
(재)전북발전연구원	◦ 지방자치단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북발전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3,180	도정 주요현안 및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전북발전연구원 운영을 위한 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50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사업추진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지원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2,905	로스쿨 장학금(전북대,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지원, 입학사정관 박람회,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 전북인재육성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
(재)전북신용보증재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4,076	청년 희망창업 특례보증 지원(희망창업자 교육 수료후 창업자금 지원), 창업보육센터 센터 입주기업 특례보증지원(입주기업에게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한계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햇살론 융자 지원,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 영세소기업 금융지원(희망드림론)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지원조례	500	'11년 내고장상품 애용 등 지역경제 살리기 도민운동 사업 지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 진흥원설립및운용조례	1,120	중소기업지원기관 집적화, 자금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상품마케팅 지원 등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한국니트산업연구원설립및 운영조례	1,010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친환경 섬유 신소재연구센터구축지원, 피톤치드 기능성을 이용한 의류제품 개발지원, 기능성닥섬유산업마케팅활성화지원 등
전북대학교 등 11개 대학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2,170	중소기업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 ·운영을 통해 기술개발능력 제고,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 생산현장의 기술지원으로 신기술·신제품 개발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	15,065	지역전략산업과 미래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성과분석·기업지원등의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클러스터구축, 전북 자동차·기계부품소재 마케팅 지원, 인쇄전자 기술교류 및 산업화 촉진 지원, R&D기업연구소 인턴 연구인력, 고비강도 소재응용 그린부품 실용화, 조선기자재연구소 전북분원 유치
(재)전북자동차기술원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 · 지원을 위한 조례	2,666	자동차기술원 운영지원, 자동차산업 기술지원 회원사 운영,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 지원, 특장요소기계부품 설계·검증기술지원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 · 지원을 위한 조례	1,557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탄소복합소재분야 전문인력양성, 부품소재기업 인프라 활용지원,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기계부품소재산업 기술지원 회원사 운영, 탄소밸리 R&BD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 · 지원을 위한 조례	200	탄소밸리 R&BD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재)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1,200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GMP시설 및 디자인센터 운영, 지역전략기업 선정 등 자체사업 추진비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2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의 설립 등)	200	헬스케어소재 산업화 지원,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품목 지정 컨설팅 및 임상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21조	78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 세부사업과제 추진, EIP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법인 4개 설립, 산단내 발생 폐기물 및 부산물 DB 구축 등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전라북도여성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644	여성의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직업 훈련 수행 지도관리, 시군여성회관의 취업 및 복지증진 사업, 여성일자리센터 청사이전 지원 등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 조례	408	고정부채 이자지원
남원의료원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 조례	410	고정부채 이자지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민법 제32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리 및 감독에 관한 규칙	60	전국 지자체 특산품, 문화, 관광 등 지역자원의 홍보, 전시, 판매

Ⅵ. 특 수 공 시

목 차

1 일자리 · 전략산업 분야

1.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창업 지원 ····· 49
2. 「청년취업 2000 사업」 지원 ····· 51
3.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 53
4. 기업중심형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 55
5.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 ····· 56

2 복지 분야

6. 저소득층 문화 바우처 지원 ····· 58
7.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 60
8.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 62

3 동부권개발 분야

9. 아토피 「에코에듀센터 건립」 사업 ····· 64
10. 119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 66
11.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 68
12. 진안의료원 건립 ····· 69

4 새만금 분야

13.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사업 71
14.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 73

5 기타 지역개발 등

15.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사업 75
16. 이전 공공기관 가족문화 탐방 77
17.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79
18.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80
19.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82
20.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5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창업 지원

목 적	창업경험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20~30대 청년창업 준비자들에게 경영노하우 및 전문교육, 사후관리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유도

❑ 개 요

○ 교육대상 : 만 20~39세 청년창업 대상자

○ 교육인원 : 400명 (연4회, 총100H, 1일 4~5H)

○ 지원업종 : 3개 업종 (서비스, 유통・물류, 외식업)

○ 교육내용 : 창업 관련 기본교육, 현장실습, 경영마케팅, 모의창업 등

※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비 자부담(5만원) 및 수료정원제 실시

○ 교육수료 후 지원사항

- 창업자금 : 최고 3,000만원 융자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 성장자금 : 창업 후 1년 이상 영업 지속자 추가 1,000만원 특례보증

❑ 추진실적

○ 교육 및 창업 실적 : 2회 181명 수료→「미니베어」 등 62개 창업

※ 현재 16기까지 교육・창업 실적 : 1,743명 수료→ 1,084창업(62.2%)

○ 희망창업 특례보증 재협약 체결(전북은행, NH농협, 전북신보 등)

- 자금 지원 확대 : 2천만 → 3천만원 까지(증 1천만원)
- 상환자금 금리 요율 인하 : 6. 15%(이차보전2.15)→5.6%(이차보전 2%)

○ 네이밍 및 포인트 간판 시안 개발 : 희망창업

○ 희망창업 수료자 전수조사 실시 : '12. 5~'12. 6

❑ 기대효과

○ 창업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 준비자들에게 경영 노하우와 전문교육 실시로 성공적인 창업유도

○ 도내 청년층 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창업





「청년취업 2000(명) 사업」 지원

목 적	청년 미취업자들이 기업근무체험을 통해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청년실업해소와 기업 인력난 해결

❑ 개 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만15 ~ 39세, 미취업 청년층

○ 지원기업 :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2개월(실무 수습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 후 9개월)
- 지원보조 : 최고 960만원 / 1인, 월 80만원

❑ 추진실적

○ 2012년도 6월 현재 : 채용 841명

- 참여 기업모집 (277개업체 1,683명, 1월) ⇒ 청년모집 및 지원
- 청년취업 2000 현장행정 2개 기업(전주, 군산) : 3월

○ 2011년도 취업 : 정규직 505명

- 기업투어실시(105명), 소양교육(200명), 인사담당 간담회(9회) 등

❑ 기대효과

○ 도내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해소 기여

○ 청년층 채용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 기대

❑ 사업 홍보, 현장행정


기업에게는 참신한 인재를!
청년에게는
보람찬 일자리를!
전라북도를 이끌어 갈 우수기업+인재를 찾습니다!
청년취업2000
Business
Job
Company
기업
청년
공개
모집
전라북도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청년모집
• 기간 : 2012. 1. 19 ~ 2. 9(3주)
• 대상 : 도내거주 15~39세미만 취업희망자
• 접수 : 회원 가입 → 기업 선택 → 면접 및 근무
기업모집현황
• 14개 시군 소재 337개 업체
(상시근로자 5인이상 및 급여 150만원 이상 업체)
• 모든 기업정보는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음
회원가입 및 문의처
http://www.1577-0365.or.kr/young
Tel : 1577-0365
일자리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전화번호 팩스번호 시군 전화번호 팩스번호
도청 280-2826 280-2830 진안 430-2537 430-2705
전주 281-2555 281-2614 무주 320-2383 320-2389
군산 450-4723 450-6416 장수 350-2330 350-2280
익산 859-5293 859-5061 임실 640-2463 640-2469
정읍 539-5643 539-6519 순창 650-1337 650-1329
남원 620-6338 620-6712 고창 560-2364 560-2369
김제 540-3185 540-3185 부안 580-4230 580-4702
완주 240-4123 240-4420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상담은 도청과 시·군청에서만 실시합니다.


청년취업2000 산·학·관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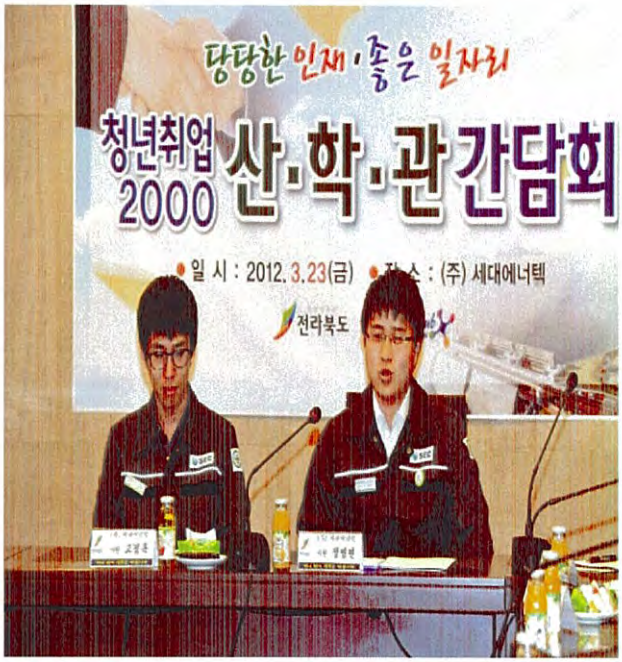
당당한 인재, 좋은 일자리
청년취업 2000 산·학·관 간담회
일 시 : 2012. 3. 23(금)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

실 태	소상공인 창업을 전담하는 기본 인프라가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창업지원의 한계
추진방향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One-Stop/ One-roof 서비스를 제공(창업보육)으로 성공창업 및 경영안정 유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

○ 사업기간 : 2010. ~ (조성 '10.9 ~ '11.6/ 운영 11. 7 ~)

○ 사업내용 : 100개 업체 창업보육(부지 5,870㎡, 건축 연면적 3,293㎡)

○ 주요시설 : 보육시설 74개실 및 스튜디어, 회의실 등 지원시설

○ 사 업 비 : 3억원(년간 운영비)　　* 조성비 20억원(국비. 10년도)

연도 / 재원	사 업 비 (억원)				
	총사업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
계	29	20	3	3	3
국 비	20	20			
도 비	9		3	3	3

□ 사업진행 현황

○ 소상공인희망센터 조성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 '10. 6

○ 소상공인희망센터 리모델링 공사 : '11. 2 ~ 6

○ 소상공인희망센터 개원 및 창업업체 입주 : '11. 7 ~

○ 제1기 입주업체 졸업 및 제2기 업체 업체 입주 : '12. 7 ~

-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창업성장보육 지원 (95개업체 입주 94개업체 창업)

□ 전경사진



□ 운영사진



기업중심「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목적	대학·기업·전라북도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공급으로 청년실업·일자리미스매치 해소 및 지역산업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3~'12. 2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 사업규모 : 6개 대학 240명(3학년 120, 4학년 120)

○ 교육대상 : 공학계열 및 지원대상 산업 관련 학과

○ 사업내용 : 도 전략산업 및 미래성장 동력산업분야

- **(전북대)** 첨단부품·소재
- **(원광대)** 식품산업
- **(우석대)** 기계·자동차
- **(군산대)** 수송기계
- **(전주대)** 스마트그린에너지
- **(호원대)** 자동차 기계

□ 주요성과

○ '11년「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참여 학생 취업률 : 86.7%

- **('10년)** 교육인원/교육이수/취업인원 : 170명/120명/99명(82.5%)
- **('11년)** 교육인원/교육이수/취업인원 : 240명/120명/104명(86.7%)

○ 커플링사업 채용 협약 : ('10년) 62개 기업, ('11년) 168개 기업

○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6개 대학 930백만원

○ 사업 성과평가 우수대학 인센티브 지원 : 4개 대학 70백만원

○ 2011년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 대학 커플링사업 전국 우수사례 선정·발표('10.4.23 행정안전부)

□ 기대효과

○ 청년실업 및 구인·구직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공급으로 지역산업 발전 도모

○ 대학·기업간 상생협력문화 창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구축사업

실 태	국내 부품·소재산업 및 플라즈마 응용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대학중심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의 일환
추진방향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및 센터 건축을 통해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기초 및 응용연구 수행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산 38-2번지

○ 사업기간 : 2009. 7 ~ 2014. 6(5년)

○ 사업규모 및 내용

-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4종 구축(Segmented Type 0.4㎿ 1대, 2.4㎿ 1대, 재료연구용 고출력 RF Type 2대)
- 센터 건축 : 부지 32,085㎡, 건축연면적 4,188㎡

○ 사 업 비 : 392.5억원 (국비 296억, 도비 30억, 군비 46.5억, 기타 20억)

재원 \ 연도	사업비 (억원)			
	총사업비	2011년까지	2012	2013
계	392.5	248	79.64	64.86
국 비	296	170.50	68.64	56.86
도 비	30	25	2.5	2.5
시군비	46.5	38.5	5.5	2.5
기 타	20	14	3	3

□ 사업진행 현황

○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구축사업 공모 선정(교과부) : '09. 4

○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구축사업 협약 및 착수 : '09. 7

○ 플라즈마 발생장치 3종(0.4MW DC, 60kW/200kW RF) 발주 : '10.11

○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실시설계 완료 : '11. 2

○ 전라북도 플라즈마 산·학·연·관 협의회 구성 : '11. 8

○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완공 : '11.12

○ 플라즈마 인력양성 전문대학원 과정 신설 : '12. 3

○ 고온플라즈마 발생장치 3종 구축 및 시운전 : '12. 5

□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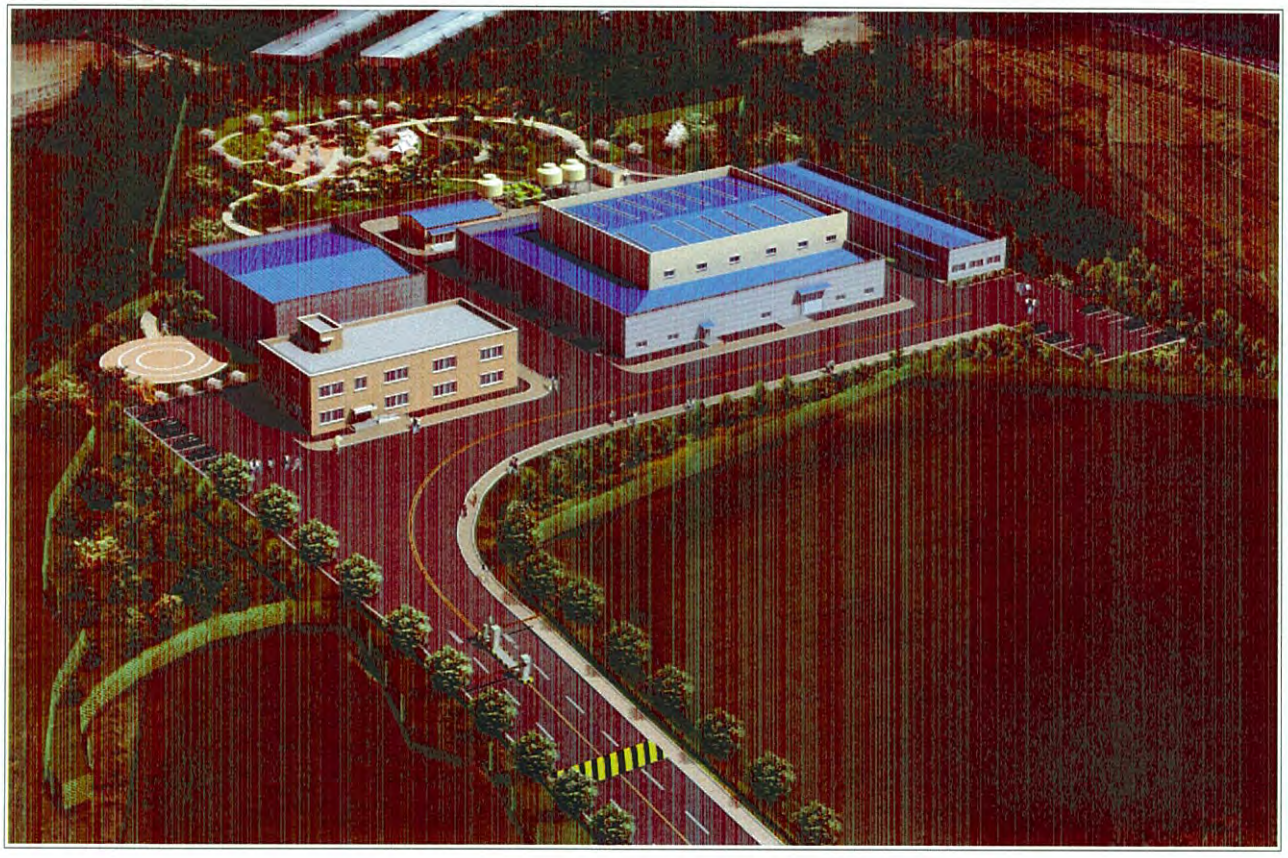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실 태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의 필요성
○ 지역, 소득수준에 따른 예술행사 관람률 격차해소 필요

추진방향

○ 저소득층 문화감수성 증진으로 삶의 질 증진
○ 수혜자 중심의 문화복지 정책 패러다임 구축
○ 저소득층 문화향유권 보장으로 전 국민의 문화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3 ~ 2012. 2월
○ 사 업 비 : 2,466백만원(국비 1,726, 도비 740)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지원범위 : 1인당 50,000원 한도(연간)
○ 사업내용 :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프로그램 관람, 도서 및 음반지원 등
○ 운영단체 : 문화연구 창(단장 김선태)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총사업비	272	416	2,466	3,435	
국비(기금)	272	326	1,726	2,505	문화바우처
도 비	-	90	222	279	기획사업
시·군 비	-	-	518	651	

※ 2011년도부터 문화바우처 카드제가 도입되어 2012년도 확대

문화바우처란

문화향유기회가 적은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및 전시회 입장권, 도서 등을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50,000원 기준

□ 사업진행 현황

○ '11년도 지역주관처 선정 : '11. 1월

○ '11년도 지역주관처 워크샵 : '11. 2월

○ 문화바우처 관계자 간담회 : '11. 3월

○ '11년도 문화바우처 카드사업 실시 : '11. 3월

○ '11년도 문화바우처 사업설명회(도) : '11. 4월

○ '11년도 지역주관처 워크샵(2차) : '11. 4월

○ 문화바우처 사업설명회(정읍) : '11. 5월 ~

[2011부터 사업변경 추진]

구 분	2011년	2010년
사 업 비	2,466백만원(국비 1,726, 도비 222, 사군비 518)	416백만원(국비 326, 도비 90)
사업대상 (실적)	47천가구 90천명(전체대상의 50%) ※ 가구별 지원	28천명 이용 ※ 개인별 지원
추진방식	문화복지 카드제	홈페이지 포인트제
지원대상	모든 문화예술 프로그램	50%할인 가능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사업주체	중앙 → 도 → 시·군 → 지역주관처	중앙 → 도 → 지역주관처
주관처선정	도에서 선정	중앙에서 선정
비용정산	카드사 → 공연장에 대금지불 → 정산(후불제)	포인트에서 감액

노 인 돌 봄 서 비 스 사 업

실 태	현재 전라북도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은 60,712명으로, 고령화, 핵가족화, 부양의식 및 가치관 변화 등으로 독거노인은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자녀, 형제 · 자매등 친인척의 무관심으로 정서적 고립 및 '고독사'발생
추진방향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내 14개 시군

○ 사업기간 : 2007년 ~계속

○ 사 업 량 : 도내 독거노인 13,683명(기본10,675명 종합3,008명)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독거노인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실제 독거노인 중 안전확인 필요한 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노인으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지원내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가정방문, 유선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사 업 비 : 671억원(국비 481억, 도비 80억, 시군비 110억)

연도 / 재원	사 업 비 (억원)				
	총사업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
계	671	286	126	129	130
국 비	481	213	88	90	90
도 비	80	33	15	16	16
시군비	110	40	23	23	24

□ 사업진행 현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수혜노인 : 10,675명)

- 기본돌보미 444명(서비스관리자 17, 돌보미427)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수혜노인 : 3,008명)

- 종합돌보미 854명

□ 기대효과

○ 노인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노인 '고독사' 방지

○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2012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사업명	2011년	2012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보수) - 노인돌보미 : 월62만원 - 서비스관리자 : 월 124만원	(보수) - 노인돌보미 : 월 63.5만원 - 서비스 관리자 : 월 127만원 (신규지원) - 무연고 독거노인 사전·사후 장례의례서비스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건강)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 (소득)전국가국 평균소득 150% 이하	(건강) -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 - 장기요양등급외 A, B - 시군구청장 인정자(장애 1~3급, 중증질환자) (소득) - (치매또는 중풍질환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 - (장기요양등급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시군구청장 인정자) 차상위 이하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실 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노후화된 주택에 대하여 개보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추진방향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주시 등 13개 시·군 (순창군 자체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6~2014년

○ 사 업 량 : 11,171호(기초수급자 노후 불량주택)

○ 사업내용 : 호당 250만원 내에서 지붕개량, 부엌·화장실·창호 등 노후·불량 주택 개보수

○ 사 업 비 : 245.1억원 (도비 122.8억, 시군비 122.3억)

재원 \ 연도	사 업 비 (억원)				
	총사업비	2011년까지	2012	2013	2014~
계	245.1	117.1	32	40	56
도 비	122.8	58.8	16	20	28
시군비	122.3	58.3	16	20	28

□ 사업진행 현황

○ '06년 시범사업 추진 : 4개시군, 33호 개량

○ '06년~'11년 사업추진 : 117.1억원 투입 6,053호 완료

○ '12년은 32억 투입 1,281호 집수리 추진

- 6월까지 800호(62.5%)정비완료

전경사진 (보수전)



전경사진 (보수후)



아토피 『에코에듀센터건립』 사업

실 태	아토피 등 환경질환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차원의 영구적인 에코에듀센터 건립 필요
추진방향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및 교육 역할 수행하는 친환경 아토피 건축자재 사용 아토피에코에듀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 11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9 ~ 2012
○ 사업규모 : 부지 97,836㎡, 건물신축 2,818㎡(친환경구조)
○ 주요시설 : 환경보건교육센터, 친환경생활관, 자연식당, 친환경주거체험시설, 야외공연장, 친환경놀이터, 치유 산책로 등
○ 사 업 비 : 127억원 (국비 50억, 도비 15억, 군비 47억, 기타15억)

연도 / 재원	사업비 (억원)				
	총사업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
계	127	65.5	51.5	10	
국 비	50	32.5	17.5		
도 비	15	4	11		
시군비	47	14	23	10	
기 타	15	15			

□ 사업진행 현황

○ '09. 3. 26 :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심의 의결
○ '09. 4. 15 :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통과
○ '10. 6. 28 : 토목(부지조성공사) 착공
○ '10. 7. 12 : 건축 실시설계 완료
○ '10. 12. 31 : 에코에듀센터 건축 착공(1차분)
○ '11. 3. 28 : 에코에듀센터 건축 착공(2차분)
○ '12. 7. 25 : 에코에듀센터 준공식

□ 조감도



□ 전경사진 및 내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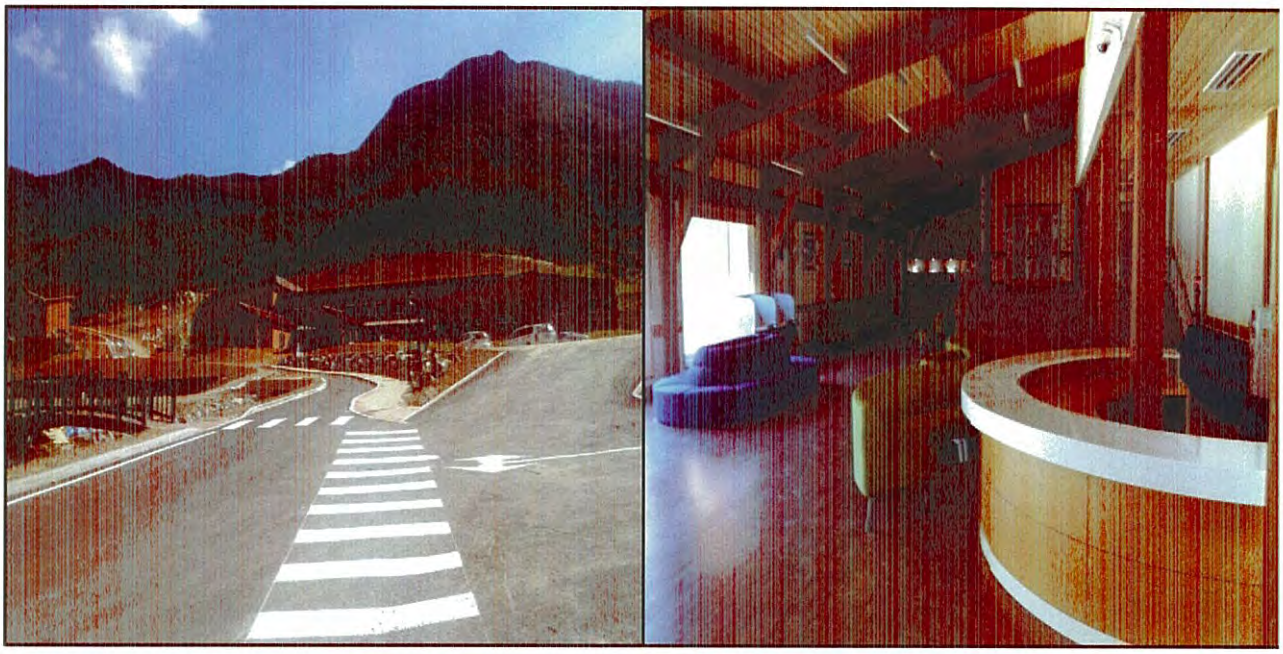

119 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실 태 도민의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고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

추진방향 국내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안전체험관으로서 테마별 실질적 체험학습식 교육으로 종합안전타운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47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9 ~ 2012년

○ 사 업 량 : 부지면적 98,154㎡, 연면적 5,876㎡, 12개동

○ 주요시설 : 재난종합체험관, 위기탈출체험관, 어린이안전마을

○ 사 업 비 : 221.53억원 (국비 110억, 도비 111.53억)

재원 \ 연도	사 업 비 (억원)				
	총사업비	2009년까지	2010	2011	2012~
계	221.53	10.5	50	95	66.03
국 비	110	5	40	65	
도 비	111.53	5.5	10	30	66.03

□ 사업진행 현황

○ '07년 1월 도민안전체험센터 추진결정(전라북도)

○ '08년 중앙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09년 5월 설계용역추진 완료

○ '10년 11월 공종별 공사계약추진 완료

○ '10년 12월 착공하여 '12년 12월 준공하고 '13년 2월까지 시운전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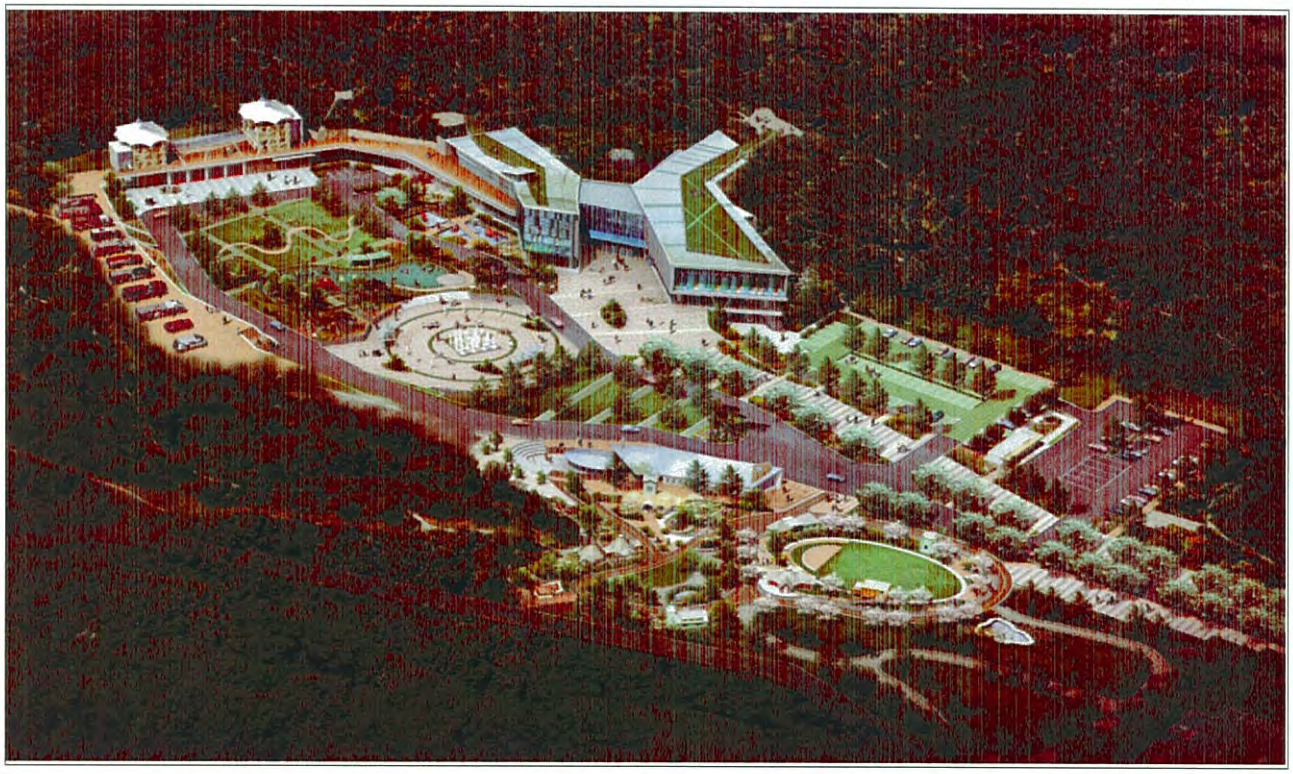

□ 전경사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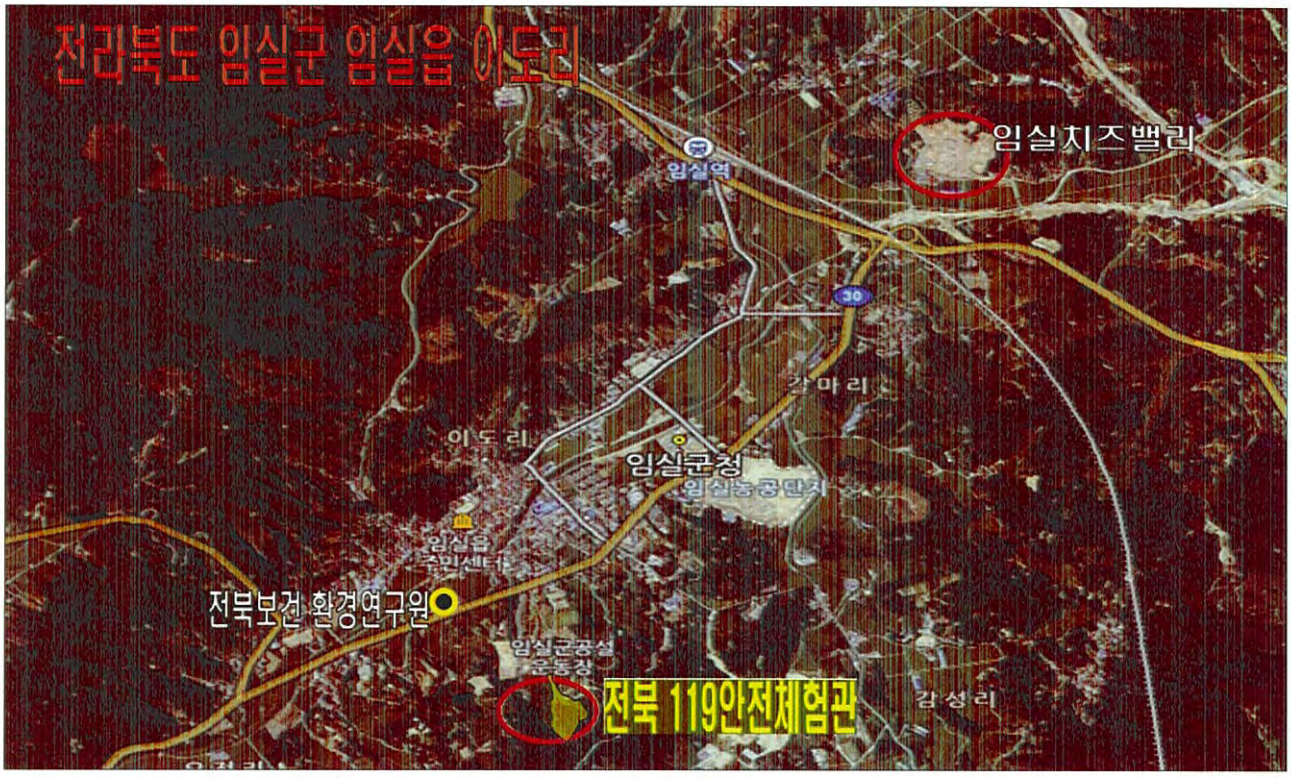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임실치즈밸리
임실역
30
강마리
이도리
임실군청
임실농공단지
임실읍
주민센터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임실군공설
운동장
전북119안전체험관
감성리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실 태

○ 태권도는 전세계 7천만명이 수련하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
○ 태권도의 지속적 발전 및 세계화를 위하여 국내·외 태권도인의 순례와 수련등 구심점이 될 공간 조성 필요

추진방향

○ 태권도를 콘텐츠로 한 '체험·테마형 공원' 조성
○ 태권도의 철학, 정신, 수련, 교육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태권도를 세계적 인기 스포츠로 육성
○ 대한민국 대표 문화브랜드 및 태권도 한류 관광 거점으로 개발

□ 사업개요

○ 위　　치 :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일원
○ 사업기간 : 2009~2013년(민자지구 2017년)
○ 사업내용 : 2,314천㎡ (태권도경기장, 연수원, 체험관, 전시관, 명인관 등)
○ 사 업 비 : 3,427억원 (국비 2,044, 지방비 141, 기부금 176, 민자 1,066)

연도 / 재원	사업비 (억원)				
	총사업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
계	3,427	344.8	532.4	884	1,665.8
국　비	2,044	318	500	827	399
도　비	70.5	13.4	16.2	30	10.9
시군비	70.5	13.4	16.2	27	13.9
기부금	176				176
민　자	1,066				1,066

□ 사업진행 현황

○ '04. 12월 : 태권도공원 조성지 확정 (전북 무주)
○ '07. 12월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08. 12월 :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 제정
○ '09. 12월 : 태권도공원 기본 및 실시계획 승인
○ '10. 6월 : 태권도공원 공사착수(부지조성 등)
○ '12. 7월 : 경기장 등 건축물 골조공사 추진(공정 47%)
○ '12. 12월 : 경기장 등 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및 내·외장 공사(공정 75%)
○ '13. 6월 : 태권도공원 조성 공사 준공
○ '13. 9월 : 태권도공원 시범운영 및 공원 개장

진안의료원 건립

실 태 동부권 산악지대에 병원급 의료기관 부재로 지역주민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및 입원환자 수요 해소 시급

추진방향 응급의료 및 입원환자 수요해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부권에 진안군의료원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0-184외 26필지

○ 사업기간 : 2010～2013년

○ 사 업 량 : 부지면적 21,717㎡, 건축면적 3,970㎡

○ 주요시설 : 입원실 80병상, 응급실, 장례식장 등

○ 사 업 비 : 94억원 (국비 45억, 도비 23억, 군비 26억)

연도 / 재원	사업비 (억원)			
	총사업비	2010년까지	2011	2012
계	94	40	43	11
국 비	45	30	15	
도 비	23	5	18	
시군비	26	5	10	11

□ 사업진행 현황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85억원) : '09.07.29

○ 국고지원사업 선정(복지부) : '09.10.19

○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140억원) : '10.10.26

○ 진안군의료원 신축공사 건축설계 완료 : '11.10.17

○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진안군) : '11.12.29

○ 진안군의료원 신축공사 착공 : '12.01.04

□ 조 감 도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 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생산기지로 조성하고 동아시아의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레저거점으로 육성 추진

추진방향 환경과 산업이 어우러진 수변개방형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도시 조성
"일터+삶터+쉼터" 기능이 특색있게 조화된 "미래형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 사업개요

- ○ 위　　치 : 새만금 간척지 일원(군장국가산단 인접지역)
- ○ 사업기간 : 2008～2018년
- ○ 사업규모 : 18.7㎢(1단계 : 10.1㎢, 2단계 : 8.6㎢)
- ○ 토지이용계획(총 18.70㎢)
  - 산업 9,808천㎡(52.5%), 상업·업무1,096(5.8%), 주택594(3.2%), 공공7,202(38.5%)
- ○ 사 업 비 : 2조 6,095억원

재원 \ 연도	사업비 (억원)					
	총사업비	2010까지	2011	2012	2013	2014~
계	2조6,095	807	454	573	2,696	2조1,0565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2조6,095	807	454	573	2,696	2조1,565

* 공공(국비 등)는 지원 금액이 미확정되어 별도 구분하지 않음

□ 사업진행 현황

- ○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 '08. 9. 24
- ○ 1공구 1차 매립공사(0.95㎢) 완공 : '09. 3 ~ '10. 7월
-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 '10. 7. 19
- ○ 1공구 2차 매립공사(0.95㎢) 추진 : '10. 12 ~ '12. 3월
- ○ 1공구 조성공사(1.90㎢) 추진 : '11. 2 ~ '13년
- ○ 2공구 매립공사(2.55㎢) 추진 : '11. 12 ~ '14. 9월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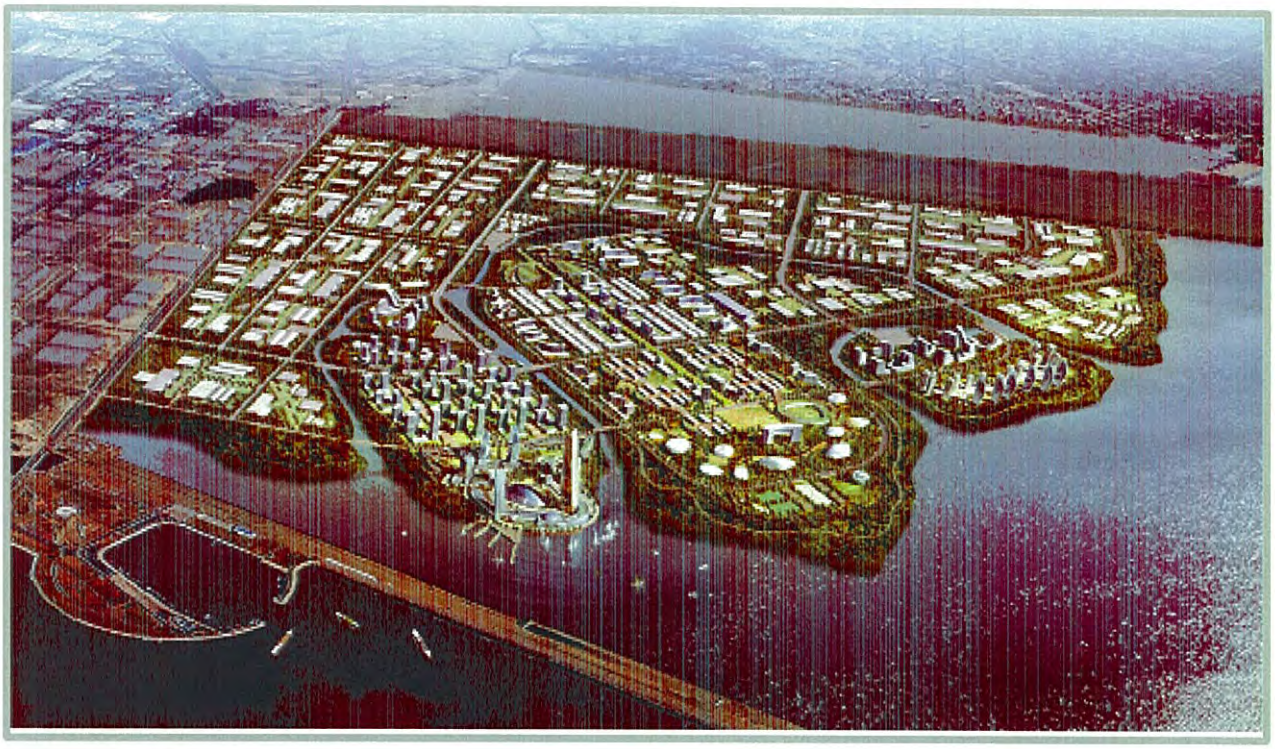

전경사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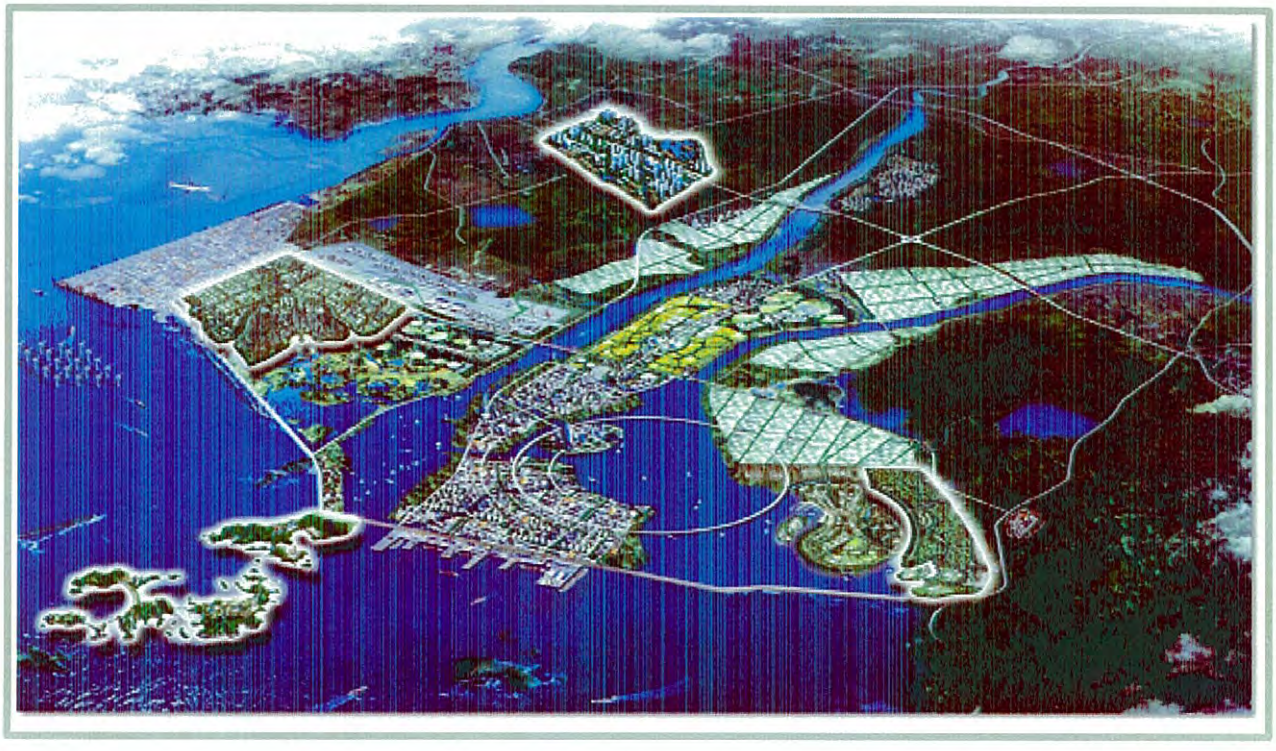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

실 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생산기지로 조성하고 동아시아의 최고의 국제적인 관광·레저거점으로 육성 추진

추진방향 관광·휴양·문화·생태·주거기능이 융합된 가족중심의 체험·체류형 관광레저공간 조성과 새만금관광개발사업 선도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간척지 일원(부안군 하서면 해창리 일원)
○ 사업기간 : 2008～2019년
○ 사업규모 : 9.9㎢(1단계 : 1.0㎢, 2단계 : 8.9㎢)
○ 토지이용계획(총 9.9㎢)
- 골프장 4,034천㎡(40.7%), 테마파크333천㎡(3.4%), 상업·숙박시설516천㎡(6.0%), 주거용지248천㎡(2.5%), 공공시설2,626천㎡ (26.6%), 투자유치용지1,915천㎡(19.3%)

○ 사 업 비 : 9,518억원

재원 \ 연도	사업비 (억원)					
	총사업비	2011년까지	2012	2013	2014	2015~
계	9,518	335	1	472	959	7,751
국　비	636				94	542
도　비	1,012				94	918
시군비						
기　타	7,870	335	1	472	771	6,291

□ 사업진행 현황

○ 전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 '08.12.26
○ 개발계획 변경 및 Gateway지역 매립실시계획 승인 : '09.12.03
○ Gateway지역 매립공사 착공 : '09.12.10
○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 '10.09.09
○ 새만금 내부준설토 활용 환경보전방안 협의완료 : '11.06.24
○ Gateway지역 매립공사 준공 : '11.11.24
○ Gateway지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염생식물 파종) : '12.04.23~

■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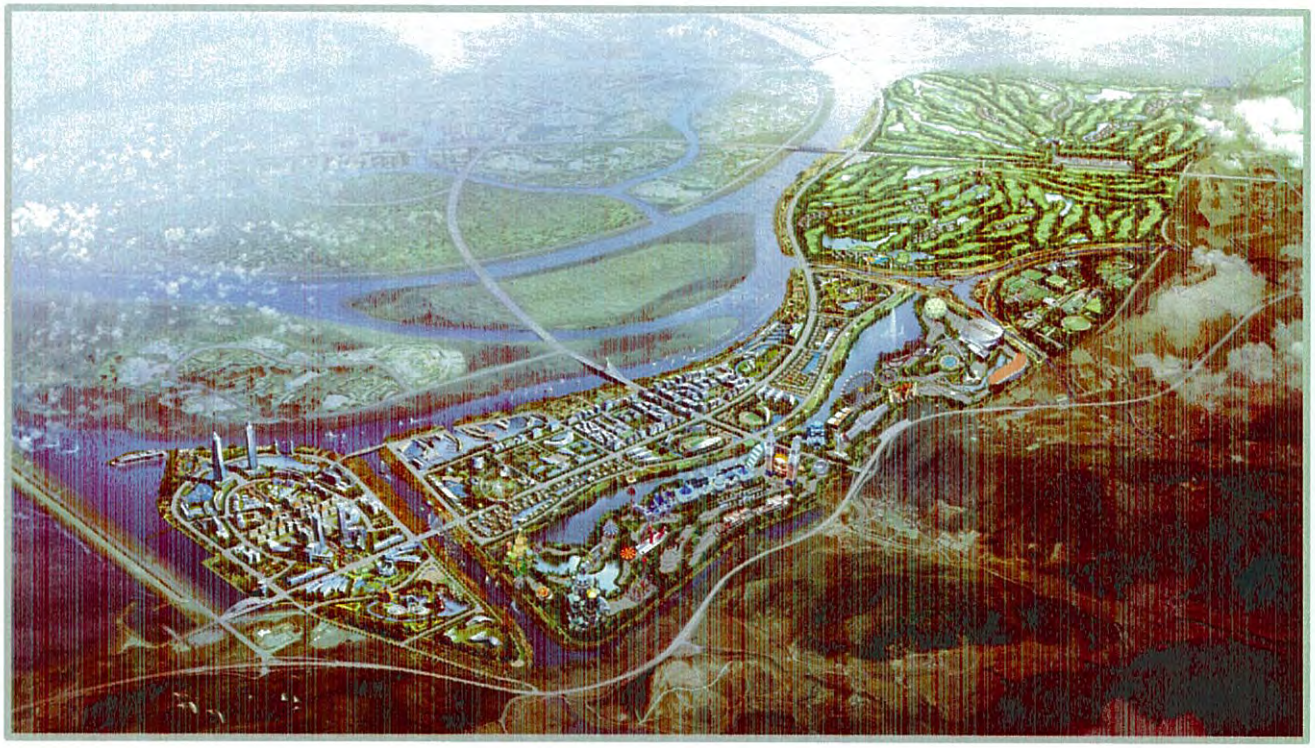

■ 위성사진(2012.7월)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

실 태 어학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생별 맞춤프로그램 제공

추진방향 문화·언어체험을 통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 2011년

○ 사 업 량 : 3,050명('08년까지 1,156명, '09년 591명, '10년 652명, '11년 651명)

○ 연수지역 : 영어권(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중국, 일본

○ 연수기간 : 초·중학생(8주), 특성화고(12주), 대학생(48주이내)

○ 운영체계 : 도·시군(행·재정 지원),교육청(학사관리),인재육성재단(선발및연수)

- 초·중·특성화고→위탁업체관리, 대학생→셀프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초·중학생(영어권 60%, 중국 80%), 특성화고(영어권 60%), 대학생 10백만원 한도

※ 국민기초 : 초·중·특성화고(100%), 대학생 20백만원 한도

○ 사 업 비 : 182억원(도비 103억원, 시군비 71억원, 기타 8억원)

재원 \ 연도	사 업 비 (억원)				
	총사업비	2009년까지	2010	2011	2012
계	182	78	34	34	36
도 비	103	42	20	20	21
시군비	71	28	14	14	15
기 타	8	8			

□ 사업진행현황

○ '11년 1월 세부계획 수립 후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홍보활동 전개(시·군 설명회,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 '11년 1 ~ 2월 겨울학기 초·중생 연수('10년 겨울학기)

○ '11년 3월 연수대행업체 선정(4개국 7개지역), 연수 지침 시달(도→시군)

○ '11년 5월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후 장학증서 수여

○ '11년 6월 사전교육(전북e스쿨, 저소득층 외국어캠프, 학생학부모 오리엔테이션)

○ '11년 7~9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체계 점검
여름학기 초·중생 연수('11년 여름학기) 실시

○ '11년 10~12월 관리체계 점검 및 연수성과분석·환류
(만족도 조사, 성과보고회 개최)

□ 2011 전라북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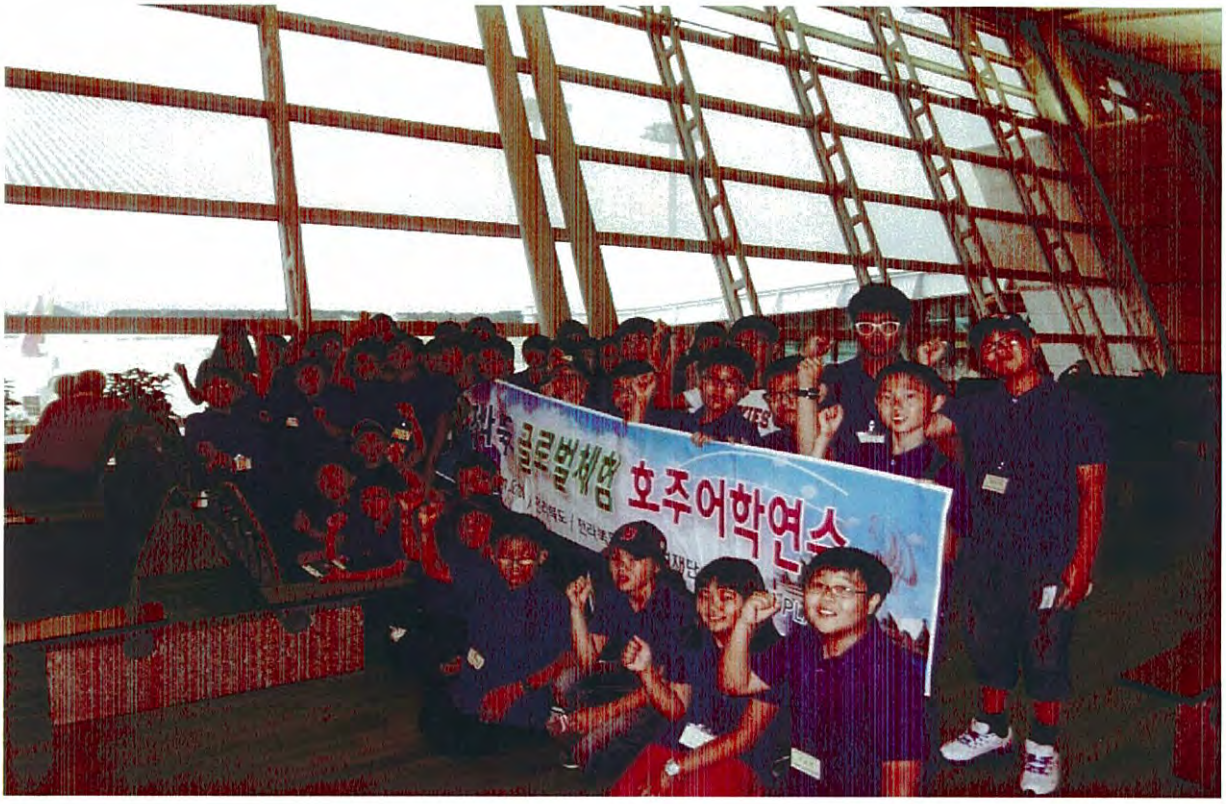

이전 공공기관 가족문화 탐방

실 태 이전공공기관 가족들의 지방이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부재로 심리적 거리감 · 불안감 잔존

추진방향 전북지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북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가족동반이전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대　　상 :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 사업기간 : 2007~2013년(이전기관 전북이전시까지)

○ 사 업 비 : 570백만원 (국비 285백만원, 도비 285백만원)

재원 \ 연도	사 업 비 (백만원)				
	총사업비	2009년까지	2010	2011	2012~
계	570	184	96	90	200
국 비	285	92	48	45	100
도 비	285	92	48	45	100

□ 사업추진 현황

○ 추진실적 : 15회 2,354명

- '07~'09년(8회) 1,434명, '10년(4회) 506명, '11년(3회) 414명

○ 내　　용

- 혁신도시 건설 현황 및 정주여건 설명
- 전라북도 교육여건 설명 및 이전지원 계획 설명
- 도내 주요 관광지 탐방 및 문화체험

탐방사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실 태

○ 600ha이상 수계단위로 경농과 축산이 연계한 단지 조성
○ 농약, 비료를 절감한 저비용의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추진방향

○ 시·군 단위에 1개소 이상 단지를 육성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농업·농촌 환경 보전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7개소
○ 사업기간 : 2006부터 / 3년간, 단지당 100억원
○ 사 업 량 : 7개소(군산, 익산, 완주, 무주, 장수, 고창, 순창)
○ 주요시설 : 미생물배양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등
○ 사 업 비 : 726억원(국비 314억, 도비 124 시군비 181, 자담 107)

재원 \ 연도	사 업 비 (억원)				
	총사업비	2010년까지	2011	2012	2013~
계	726	401	100	113	112
국 비	314	200	40	39	35
도 비	124	80	12	16	16
시군비	181	80	28	36	37
기 타	107	41	20	22	24

□ 사업진행 현황

○ 사업 설명회 및 주민 공청회를 거쳐 사업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및 입체적 사업계획 수립
○ 공모 평가를 거쳐 6연속 선정(현장평가 → 공개발표 평가)
○ 일정별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완공 - 완주, 익산 추진 - 5개소)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실 태 가축분뇨을 이용하여 에너지 생산하고 남은 소화액은 액비화하여 자원순환 촉진 및 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추진방향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농경지 살포를 통한 화학비료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생활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정읍시 신태인읍 연정리 581번지

○ 사업기간 : 2010 ~2011년

○ 사 업 량 : 1개소(가축분뇨 70톤/일)

○ 주요시설 : 혐기성소화조, 액비화시설, 저장조, 발전기 등

○ 사 업 비 : 70억원(국비21, 도비6.3, 시군비14.7, 융자14, 자담14)

재원 \ 연도	사 업 비 (억원)			
	총사업비	2010년	2011	2012
계	140	67	3	70
국 비	42	21		21
도 비	12.6	3.3	3	6.3
시군비	29.4	14.7		14.7
기 타	56	28		28

□ 사업진행 현황

○ '10년 8월 공법업체 선정

○ '10년 12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완료

○ '11년 7월 사업 착공

○ '12년 8월 사업 완공 및 시험가동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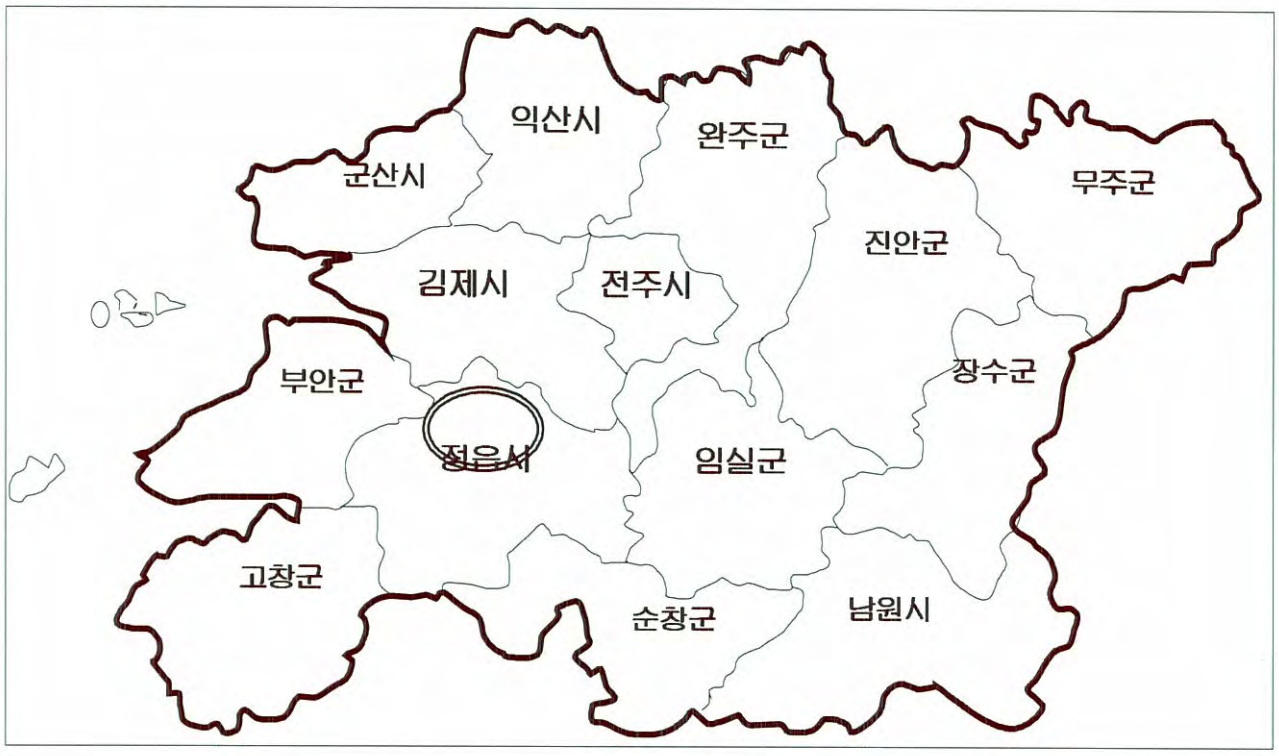
익산시
완주군
군산시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전주시
부안군
장수군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순창군
남원시

□ 전경사진


27/06/201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실 태

○ '08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안전사고 사망자 30,475명 중 자살 제외하고 가장 많은 5,870명(19.3%)

※ 보행자 사망률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2,137명)로서 OECD 회원국 평균(17.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추진방향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선진 안전문화 정착

○ 누구나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 공간 조성하여 도로 공간 영역확보 및 보행환경 질의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도 사업소, 전주시 등 14개 시·군

○ 사업개요 : 564개소 2,646km

- 지방도 115개소 997km 3,479억원, 시군 449개소 1,649km 5,568억원

※ '10까지 투자 : 13개소 17.7km 211억원 (국비 106, 지방비 105)

○ 사업기간 : 2009 ~

○ 사업내용 : 보도신설 및 확장, 중앙분리대 설치, 부체도로설치 등

○ 사 업 비 : 9,047억원 (국비 4,523　도비 1,740　시군비 2,784)

재원 \ 연도	사 업 비 (억원)			
	총사업비	2011년까지	2012	2013~
계	9,047	327	107	8,613
국 비	4,523	163	53	4,307
도 비	1,740	29	11	1,700
시군비	2,784	135	43	2,606

□ 사업진행 현황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실태조사 및 제출 : '10. 5 ~ 6월

○ '11년 사업 추진지침 시달 및 가내시 : '10. 10. 24.

○ '11년 사업계획 수립제출 : '10. 11. 24.

○ '11년 설계 및 용지매입 : '11. 1 ~ 2월

○ '11년 사업착공 및 준공 : '11. 3 ~12월

□ 추진배경

○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대책 적극 추진

○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권리에 대한 국민 의식변화

- 도로관리를 보행자 우선으로 바꿔야 할 행정의무 부과 추세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교통 활성화 정책 필요성 대두

- 대중교통·자전거도로 등과 연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필요

□ '1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내역

시군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1,600	5,800	1,500	4,300	
전북도	완주 이서지구 등 7지구	보도신설 - 폭 2.0m - 연장 3.8km	3,000	1,500	1,500		
전주시	송천로 (시도)	보도신설 - 폭 4.0m - 연장 3.2km	3,000	1,500		1,500	
익산시	선화로 (시도)	보도신설 - 폭 3.0m - 연장 3.1km	3,000	1,500		1,500	
정읍시	충정로 (시도)	보도신설 - 폭 3.0m - 연장 5.0km	2,000	1,000		1,000	
남원시	남문로 (시도)	보도신설 - 폭 4.0m - 연장 1.5km	600	300		300	

○ 완주 이서지구

< 시행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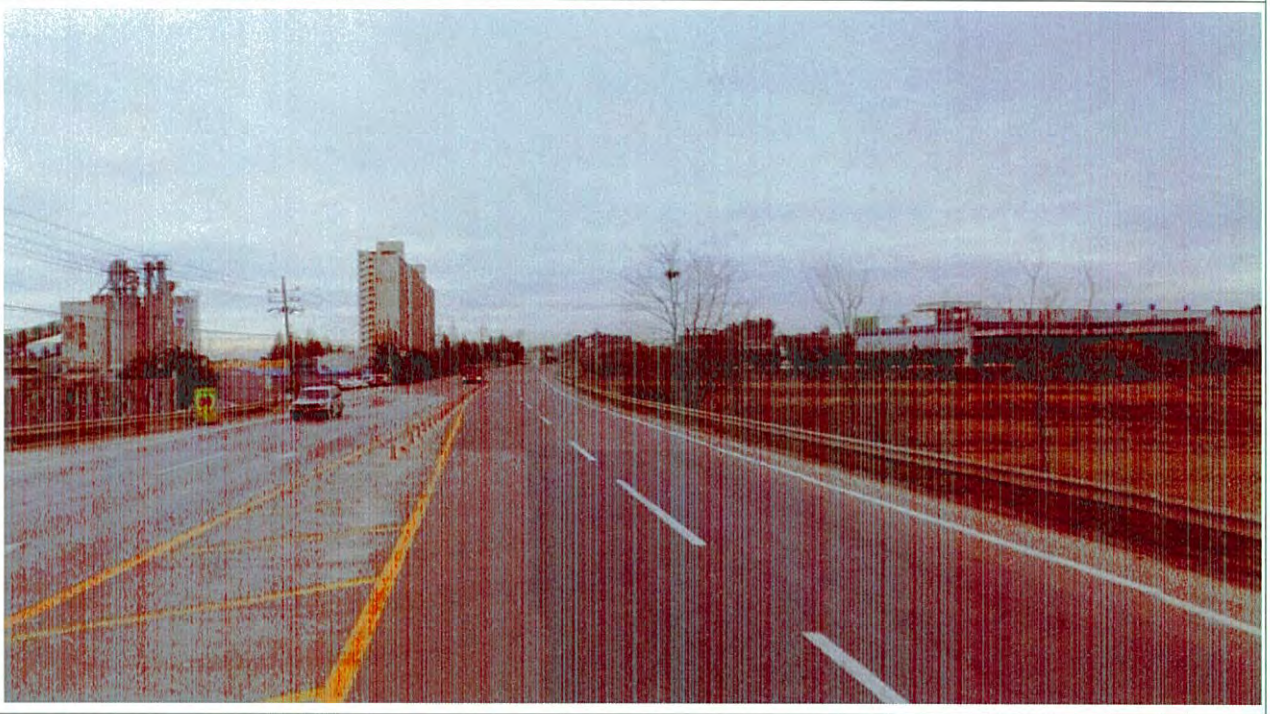

< 시행 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 태	상습침수·붕괴 등 재해위험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추진방향	침수, 붕괴의 재해취약요인을 조기 해소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하천 및 절개지 정비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 총 대 상 : 14개 시·군, 224개 지구(지정관리 128, 완료96)

○ 총사업비 : 6,921억원(국 4,153, 도 1,372, 시군 1,396)

○ 사업기간 : 1998 ~ 2016년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지정권자 : 시장·군수)

재원 \ 연도	사 업 비 (억원)			
	총사업비	2011년까지	2012	2013~
계	6,921	3,199	632	3,090
국 비	4,153	1,920	379	1,854
도 비	1,372	628	126	618
시군비	1,396	651	127	618

□ 추진상황

○ 사업량 : 96개지구 3,199억원(국 1,920, 도 628, 시군 651)

- '11년도 : 24개지구 575억원(국 345, 도 115, 시군 115)

※ 완료 96, 추진중 26, 향후추진 102

□ 기대효과

○인명보호 10,609세대 29,164여명, 재산보호는 건물 11,591동, 시가지 침수 481ha, 농경지 침수 9,208ha의 예방효과

전경사진 (시공전)



전경사진 (시공완료)



용 어 해 설

색 인

- 가용재원(可用財源)
-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 결산(決算)
-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 공사·공단(公社·公團)
- 공유재산(公有財産)
- 교부세(交付稅)
- 국고보조(國庫補助)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 국고부담금(國庫負擔金, state liability)
- 국세(國稅)
- 금고(金庫)
- 기금(基金)
- 당겨쓰기
-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 목적세(目的稅)
- 발생주의(發生主義)
- 법정예산(法定豫算)
- 보전지출
- 보증채무부담행위
- 보통세(普通稅)
- 복식부기(複式簿記)
- 부담금(負擔金)
- 불용액(不用額)
- 사고이월(事故移越)
- 사업예산제도
- 성과주의 예산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 세외수입(稅外收入)
- 세입(歲入)
-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 세입결산(歲入決算)
- 세입예산(歲入豫算)
- 세출(歲出)
- 수의계약(隨意契約)
-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收入의 直接使用 禁止의 原則)
- 수입대체경비(收入對替經費)
- 순계예산(純計豫算)
-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 예비비(豫備費)
- 예산(豫算,budget)
- 예산과목(豫算科目)
- 예산서(豫算書)
- 예산안(豫算案)
-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 예산의 이용(豫算의 移用)
- 예산의 이체(豫算의 移替)
-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 예산편성 (豫算編成)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 예산총칙 (豫算總則)
- 의존수입 (依存收入)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 일반회계 (一般會計)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 잉여금 (剩餘金)
- 자본지출 (資本支出)
- 자체수입 (自體收入)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 재정보전금 (財政補塡金)
- 재정분석 (財政分析)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 재정진단 (財政診斷)
- 전년도잉여금 (前年度剩餘金)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 지난회계연도 수입 (—會計年度 收入)
- 지난회계연도 지출 (—會計年度 支出)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 지방기금 (地方基金, local fund)
- 지방세 (地方稅)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 지출 (支出)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 채권 (債權)
- 채권 (債券)
- 채무 (債務)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率)
- 총계예산 (總計豫算)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 출연금 (出捐金)
- 출자금 (出資金)
- 통합재정수지
-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 특별회계 (特別會計)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 프로그램 (program)
- 프로그램 예산제도 (program豫算制度)
- 회계 (會計)
- 회계연도 (會計年度)
- 회계연도 개시전 지출 (會計年度 開始前 支出)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 가용재원 (可用財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함.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임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외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일컬음.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이러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임. 가용재원은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일부에서는 가용재원이 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한 모든 재정지출에 사용되는 재원이라고 정의하기도 함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 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고 1개년도 단위의 공사로서는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하여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이며,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의 설정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예산으로 정하고 각년도의 지출은 각년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으며, 계속비 설정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연도별 금액 등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예산으로 변경할 수 있음

계속비의 매 회계연도 연도별 금액에 관련된 세출예산 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것은 각 연도의 결산시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공사·공단 (公社·公團)

공사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공공기업체를 말함.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 등에 의하여 출자 설립한 특수법인임.

공단은 일정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을 말하는 바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공조합과 같은 말임

●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취득이나 관리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함

● 교부세 (交付稅)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도를 지정함이 없이 교부(특별교부세 제외)하는 자금을 말함

●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고보조라 함은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지칭하는 개념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임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혹은 법인과 개인)에 보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 용도에 한하여 그 재원을 보조해 주는 조건부교부금제도임.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국고부담금 (國庫負擔金, state liability)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비임

의무교육비관계 국고부담금, 공공사업비 보조부담금, 재해복구사업 보조부담금 등이 그 예임

●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금고지정의 원칙은 '1단체 1금고'이나 특별회계의 금고는 법령(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해 별도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음

금고선정대상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3조에 의한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 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함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한편, 재해구호법, 재난관리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도 있음

당겨쓰기

연도말까지에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는 확정되었으나 출납폐쇄기한까지에 수입될 세입이 이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견될 때에 다음연도의 수입을 현년도에 앞당겨 쓰는 것임

당겨쓰기에 대한 예산상 처리방법은 당겨쓰기한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서 편성하고, 이로서 지출한 당해연도의 세출은 다음 세출예산에 과년도지출로 편입하여야 함

당겨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당겨쓰기를 한 때에는 상급기관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임

●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음

● 발생주의 (發生主義)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원인 즉 채권채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회계처리방식을 발생주의(채권채무주의 또는 실질주의)라 한다.

*기간손익 : 한 회계연도에 일어나는 기업의 경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

● 법정예산 (法定豫算)

우리나라의 법정예산은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으로 구분되고, 다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의 3종으로 구분된다.

● 보전지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지출 중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성 지출을 말한다. '차입금 이자·원금상환, 예치금' 등 4개 편성목에 의해 지출된 예산으로 식별될 수 있다.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함

●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지방재정법 제13조)

●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과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이 이에 속함

● 복식부기 (複式簿記)

자본운영 과정의 집약적 성과인 손익을 자산측과 자본측의 양면 계산을 하고 이것을 대조하여 자기검산을 할 수 있는 부기형태를 말한다.

복식부기의 본질은 기업의 계정 및 계산 대상이 완전한 대응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고, 계산의 정확성은 부기 자체가 지니는 구조로부터 유도되어 자동검증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권장·지도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된다.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나며 지방재정법에 세출예산의 결산시 불용액을 명백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용액은 결산시에 그 금액이 확정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
(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된다.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 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명시이월 예산을 다시 사고이월함은 법적 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 사업예산제도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짐.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즉,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이에 대한 국회심의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고, 국가재정이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제도적 장치임

●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 세외수입 (稅外收入)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①재산임대수입 ②사용료수입 ③수수료수입 ④사업수입 ⑤징수교부금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발생이 임시적인 불특정 수입으로 ①순세계잉여금 ②전입금 ③융자금 수입 ④잡수입 ⑤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됨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 세입결산 (歲入決算)

세입결산은 공공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을 계산하는 일을 말함

● 세입예산 (歲入豫算)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임.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과정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그 이유는 예산편성시 세입과 동일한 금액을 세출에 편성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지출이 허용되므로 결론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금전적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 및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장별 구분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 6개로 관별 구분은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등 11개 관으로 항별 구분은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 28개항으로 구분되어 있음

세출 (歲出)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재화의 지출 특히 회계연도내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공공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

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 등의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음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收入의 直接使用 禁止의 原則)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안됨. 다만,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수입대체 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음

수입대체경비 (收入對替經費)

수입대체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 등의 수입과 직접 관련 되는 세출의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수요자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임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 상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비로서 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것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자로 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를 말함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됨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바라는 승인 요구서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상이한 특수한 의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것이나 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문서임

●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서 (豫算書)

지방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

● 예산안 (豫算案)

자치단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 한 것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예산의 이용 (豫算의 移用)

예산의 이용은 자치단체의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의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예산의 이체 (豫算의 移替)

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 (豫算編成)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사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말함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1회계연도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그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함

이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순계주의가 있는 바, 이는 세입을 수납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세출을 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차감한 잔액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으나, 예산상으로 흔히 쓰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중복되는 수입과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순계예산은 파악하기 어려움

● 예산총칙 (豫算總則)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련된 총괄적인 규정을 예산총칙이라 함.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있음

총 조세중 지방세가 국세보다 징수규모가 적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재원을 말함

●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1단체마다 1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부족재원은 국가의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은 자치단체의 존립·유지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 활동을 위해 지출됨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행정 기능유지 및 고유사무의 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흔히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이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되자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별도 특별회계의 운영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현재 다수의 특별회계가 설치·운용되고 있음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때 한도액(회계별 예산액의 3%이내)이라 함은 그 차입의 현재액이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최고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도내의 합계액은 아님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세계상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것임

●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발급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임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도 비지정재원으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재정진단결과 재정운영이 극히 불건전하여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재정진단평가위원회는 관련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단체는 권고안을 기초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재정보전금 (財政補塡金)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의 일부를 실제징세처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재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하여 인구수, 징세실적 등에 따라 시·군에 재교부하는 제도임

종전의 징수교부금제도는 도세를 시·군에 위임·징수함에 따라 그 사무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였으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재원보전기능이 가미됨

●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재정보고서의 작성과 자기검증과정에서 재정관리능력의 향상과 책임재정의 의욕을 강하게 유발시키는 계기가 됨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은 진행과정으로 볼때 재정분석이 선행단계이며, 재정진단은 후행단계라고 말할 수 있음

재정진단은 분석시 나타나지 않은 재정위기요인이나 예기치 않은 재정위기의 발생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에 대한 재정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에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적·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전년도잉여금 (前年度剩餘金)

결산상의 잉여금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결산상의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서 볼 때 당해 결산상의 잉여금을 말함

1회계연도의 예산의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불용액(不用額)이 생기거나 세입예산 이상으로 수입이 있었을 경우에 발생되며, 회계연도(1~12월)의 예산운용 결과(결산)가 확정되는 것은 익년도 3월이기 때문에 전년도잉여금이라 함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는 조세지출 항목들을 세출예산과 동일한 체계로 분류하여 실적과 전망 등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함. 이는 각종 세법 조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사업들이 직접적인 재정지출과 같이 동일한 수준에서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특별·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세의 비중이 높고,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특별·광역시가 자치구 상호간에 재원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세인 취득세·등록세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률을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자치구가 자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교부금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자치구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방교부세에 갈음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음

●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 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산편성,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지난회계연도 수입 (—會計年度 收入)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인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 이를 현년도 즉,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회계연도 수입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함

즉 출납폐쇄기간이 만료되기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수입이 그 후에 납부되었거나 예산편성당시 예상하지 못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위약금과 같은 우발적 수입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 지난회계연도 지출 (—會計年度 支出)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를 현년도의 세입을 재원으로 현년도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임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라 함은 회계연도 소속구분상 지난 연도에 속하는 경비를 말하는 바 이에 대하여 채주가 출납폐쇄기한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지출폐쇄기한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지난회계연도 지출은 경비 소속연도의 각 항(정책사업)의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당겨사용은 당해회계연도내 지출(출납폐쇄기간인 2월이내에 집행)되며 당해연도 세입의 부족을 익년도 세입에서 충당하여 지출하는 것이며, 지난회계연도 지출은 익년도 회계연도내에 지출(출납폐쇄기간인 2월을 경과하여 집행)하고 당해연도의 불용액의 범위내에서 익년도 예산에서 제출하는 것임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서 무조건부 교부금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구체적인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다만 사후적인 배분내역만을 공개하고 있음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 되고, 그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총액으로 조성됨

● 지방기금 (地方基金, local fund)

기금(Fund)이란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Off budget) 별도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을 말함.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장점에 비해 개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는 기금설치·운용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에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재정수요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뉨.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5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구분함

또한,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형성하고 있음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지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도임. 정부간 재원이전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자원을 재배분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규모를 바꾸고 지여주민의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를 지방재정조정제도라 할 수 있음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은 지방의 일반재정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에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음

지방교부세는 정부간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원보장을 위해 내국세의 일부(19.24%)를 지방정부에게 무조건부로 교부하는 제도임.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제도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부(20%)와 교육세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제도임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지방채의 종류에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이며 차입금은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

1.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해당되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外債)를 발행하는 경우나,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출 (支出)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결정(집행품의) 행위와 경리관의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원이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함

협의의 지출은 지출원인 지출의 결정과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임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함

●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채권 (債券)

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공채, 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말함

● 채무 (債務)

채무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함. 지방재정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범위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가 해당됨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text{채무상환비비율} = \frac{\text{최근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text{최근 4년간 일반재원수입액}} \times 100$$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부동산교부세

●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i) 지출원의 정산지출 ii)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iii)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납폐쇄기한은 사무완결기한과는 상이함. 사무완결기한은 출납에 관하여 장부의 정리나 계산증명서류의 정리기한이며 3월말까지임

출연금 (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 출자금 (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 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 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관계에 있어 상호간에 소요경비를 전출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시행령 제3조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정하고 있음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품목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품목예산이라고 함.

● 프로그램 (program)

재정분야에 도입된 프로그램의 개념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개의 활동(activities : 단위사업)들을 한데 묶어 놓은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예산제도 (program豫算制度)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기존의 투입·품목 중심의 예산체계에서 벗어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유사한 기능의 사업들을 프로그램 단위로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함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정운용과 성과관리제도의 토대가 되며, 참고로 이에 따라 편성된 국가의 2008년도 예산은 16개 분야, 68개 부문, 81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분야(function) - 부문(sub-function) - 프로그램(program) - 단위사업(activity) - 세부사업(task)의 5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서 '분야'란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목표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을 분류한 것을 말함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개시전 지출 (會計年度 開始前 支出)

회계연도 개시전 지출이라 함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즉 1월 1일 이전에 당해 연도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말함

세출의 지출은 당연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